인천광역시 중구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결	기 관 의 장

구 보

제 592 호

2013년 6월 3일 월요일

차 례

규 칙

○인천광역시중구규칙 제2013-786호(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전부개정 규칙) ····· 3

○인천광역시중구규칙 제2013-787호(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87

○인천광역시중구규칙 제2013-788호(인천광역시중구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03

○인천광역시중구규칙 제2013-789호(인천광역시중구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폐지규칙) ····· 116

○인천광역시중구규칙 제2013-790호(인천광역시중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 ····· 117

훈 령

○인천광역시중구훈령 제2013-291호(인천광역시 중구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 규정) ····· 118

고 시

○인천광역시중구고시 제2013-48호(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138

회람								

발행 : 인천광역시 중구 편집 : 홍보체육진흥실

공 고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3-487호(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에 따른 공시송달) …· 139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3-489호(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에 따른 공시송달) …· 140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3-493호(손실보상계획 열람공고(영종미개발지역 소1-3호선 도로개설공사)) …… 141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3-494호(도로명주소 공시송달 공고) …… 158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3-495호(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명:영종미개발지역 소1-3호선 도로개설공사)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164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3-496호(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명:영종미개발지역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177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3-500호(담배소매인 폐업신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 190

규 칙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홍 섭

2013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중구규칙 제786호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전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3조(인사위원회 설치)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인사위원회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각 국장과 보건소장,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및 법 제7조제3항과 제5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하되,「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와 제9조의4에 따른다.

제5조(인사위원회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 제8조에서 정하는 사항
2. 인사정책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사항 중 특히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인사위원회 사무직원)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7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9조의4제2항 각 호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인천광역시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시험

제9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의 20일 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하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 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에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13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일반직 채용시험
   가. 7급 이상 : 20세 이상
   나. 8급 이하 : 18세 이상
2.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

제14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1조제5항 및 제22조에 따른 방법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 때문에 제13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 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전역 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6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제17조(시험수당 등 지급)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시험위원 등에게는 「인천광역시 중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면접시험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순위가 같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을 충족할 때까지 같은 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분야·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9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9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1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0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21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에서 정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와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2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2에 정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와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13에 따른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13에서 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단,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

출신학력별	임용 예정 직급
대 학 졸 업 자	6급·7급·연구사·기능6급·기능7급
전문대학졸업자	7급·8급·지도사·기능7급·기능8급
고등학교졸업자	9급·기능9급 이하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와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4 및 별표 14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

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와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22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서 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2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제23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 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7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 제4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24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 제한) 제22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의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7에 따른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7에 따른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과 같다.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에 따른다.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5와 같다.

제4장 임 용

제26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7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마친 사람

제28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

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30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6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7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31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 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2조(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9와 같다.

제33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4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8과 같다.

제34조(구 및 동 간 인사교류) ① 구청장은 구 본청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동에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구 본청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근무성적,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제35조(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제12조제2항에 따른 도서·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하는 근무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거나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 우선 보충한다.

제36조(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구청장은 격무·기피업무 등 구청장이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37조(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그 업무에 경험이 있는(구는 8급 이상, 동은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별표 1부터 별표 19까지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각종 시험 시의 구비서류(제10조제2항 관련)

구분	구비서류의 종류	비 고
1	주민등록표 초본 1통 (전체 이력기재)	시·구, 읍·면·동장 발행
2	복무확인서 1부	현역군인에 한함
3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4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
5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규정된 수급자로서, 저소득층 구분 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6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규정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7	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별표 2]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 응시자격 구분표

(제21조제4항, 제5항 및 제25조제1항 관련)

계급 / 직렬 / 직류		연 구 관 · 연 구 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
	미 술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자
	국 악	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자
	국 어	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자
편사연구	편 사	역사학을 전공한 자
기록연구	기록관리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자
공업연구	기 계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자
	전 기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자
	전 자	
	금 속	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자
	섬 유	섬유공학을 전공한 자
	화 공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자
	화 학	
	산업경영	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자
	물 리	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자

계급 / 직렬 / 직류		연 구 관 · 연 구 사
농업연구	작 물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자
	농업환경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자
	작물보호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자
	농업경영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자
	잠업곤충	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자
	원 예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자
	생명유전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자
	농촌생활	식품학, 식품가공학, 생화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농촌관광학, 산업보건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자
	축 산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자
	농 공	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식품가공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자
	농식품개발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한 자
녹지연구	임 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자
	조 경	

계급 / 직렬 / 직류		연 구 관 · 연 구 사
수의연구	수 의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자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해양학, 해양공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물리학, 지리정보학,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수산자원	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수산양식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자
	수산공학	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자
	수산가공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자
	수산경제	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자
보건연구	의 학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자
	약 학	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자
	공중보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자
환경연구	환 경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시설연구	토 목	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자
	건 축	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자

비고 : 윗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별표 3]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전직시험 응시자격 구분표

(제21조제4항, 제5항 및 제25조제1항 관련)

계급 / 직렬 / 직류		지 도 관	지 도 사
농촌지도	전 직 류 (농촌생활 직류는 제외한다.)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농촌생활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을 전공한 자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어촌지도	어 촌	수산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비 고 : 1. 윗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윗 표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22조 관련)

직렬 \ 직류 \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산	전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	사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수의	수의	수의사	수의사	
의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무	치과의사		
약무	약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제			
간호	간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 \ 계급 /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 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 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 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기 사(지적)	기술사(지적) 기 사(지적)	기 술 사(지적) 기 사(지적) 산업기사(지적)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5]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21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산업기사

2. 기능직공무원

임용예정 계급	기능 5급	기능 6급	기능 7급	기능 8급	기능 9급
자격증의 등급 및 경력기준	대한민국명장,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기사(2년), 산업기사(4년)	기사, 산업기사(2년), 기능사(4년),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2년)	산업기사, 기능사(2년),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전국기능대회 입상자(2년)	기능사, 전국기능대회 입상자

비 고

1.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의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 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 : 10년이상, 3급 : 8년이상, 4급 : 4년이상,

2.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3.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6.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6]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21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행 정	운 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공 업	일반기계 농업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조 선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금 속 야 금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잠 업	기 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농 화 학	기 술 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생물공학, 임업종묘,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녹 지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수산제조 수산물검사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식품
	수산증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시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 기 물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	일반항공 정 비	기 술 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 사 : 항공 산업기사 : 항공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지 적 측 지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통시설 도 시 교통시설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디 자 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	통 신 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렬·직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함 단, 기능직 공무원 중 신설된 기후환경 직렬의 자격증은 기사(대기환경), 산업기사(대기환경), 기능사(환경)로 한다.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 계급 / 직류		5 급	6급	7 급	8 급	9 급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 경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운 수		물류관리사(9) 철도교통안전관리사(9)	물류관리사(6) 철도교통안전관리사(6)	물류관리사(3) 철도교통안전관리사(3)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사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 육 행 정	교육행정	변호사				

직렬 \ 계급 / 직류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 (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원자로조 종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 (7) 수의사(7)	수산질병관리사 (3) 수의사(3)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계급 / 직렬 / 직류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임상병리사(8) 의무기록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방사성동위원소취 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	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임상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 무	치과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약사(3)	약사		
	약 제	한약사(7)	한약사(3)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3)	수의사	위생사(2)	위생사
	수 질	수의사(7)	약사(3)	약사		
	대 기	약사(7)	위생사(8)	위생사(5)		
	폐 기 물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환경측정분석사(3)	환경측정분석사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 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건 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수기술자)
	디 자 인	건축사(5)	건축사			

비 고 : 제1조의 다목의 「기타요건」은 이 표에도 적용한다.

나. 기능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 계급	직류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전 기	전 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기 계	기 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선박항해	선박항해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선박기관	선박기관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보 건	보 건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간호사(5) 조산사(5) 영양사(5)	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간호사(2) 조산사(2) 영양사(2)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영양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사(5) 조산사(5)	간호사(2) 조산사(2)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위 생	위 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조리사 1급(3) 오물처리사1급(3)	조리사 1급 조리사 2급(2) 오물처리사 2급(2)
조 리	조 리		조리사 1급(4)	조리사 1급(2)	조리사 1급 조리사 2급(2)
사무보조	워 드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필 기			한글속기 1급 영문속기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한글속기 2·3급 영문속기 2·3급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계 리			주산 1급이상 부기 1급	주산 2·3급 부기 2급
	사 서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비 고 : 1. 제1조의 다목의 「기타요건」은 이 표에도 적용한다.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7]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21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 제3항 관련)

1. 연구직 공무원

직렬 \ 직류 \ 계급		연 구 관	연 구 사
공업연구	기 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에너지관리, 승강기)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기사(섬유, 의류)
	화 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식품)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식품)
	화 학		
	산업경영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 리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농업연구	작 물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약사
	농업환경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 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 약사, 위생사(5)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 생물공학)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 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직렬 \ 직류 \ 계급		연 구 관	연 구 사
농업연구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수의사
	농 공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용접, 금형, 금속재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농식품개발	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	기사(식품, 생물공학), 영양사(5), 위생사(5)
녹지연구	임 업 조 경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수의연구	수 의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수산자원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양식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수산공학	기술사(해양, 어로)	기사(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가공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경제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보건연구	의 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 학	약사(7), 한의사(2), 한약사(7)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간호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직렬 \ 직류 \ 계급		연 구 관	연 구 사
환경연구	환 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분석사(7)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환경측정분석사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 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비 고 : 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후 (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지도직 공무원

직렬 \ 직류 \ 계급		지 도 관	지 도 사
농촌지도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잠 업	기술사(생사)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6) ※1999.3.27이전 취득
	원 예	기술사(종사, 시설원예,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생물공학,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수의사
	가축위생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농촌사회	평생교육사 1급	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2급
	농업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2급, 위생사(5), 영양사(5)
어촌지도	어 촌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7)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비 고 : 1. 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8]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25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 직류 \ 계급		5급 이상	6·7급	8·9급
행정	운수			산업기사(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산	전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	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공업	일반기계 농업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정관리,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계운전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생산기계,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렬 \ 직류 \ 계급		5급 이상	6·7급	8·9급
공 업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원 자 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야 금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99.3.27 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직렬 \ 직류 \ 계급		5급 이상	6·7급	8·9급
공 업	가 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자 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잠 업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3.27 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농 화 학	기술사(농화학)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임산가공)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수 의	수 의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 로 수산물검사 해양교통시설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직렬 \ 계급 / 직류		5급 이상	6·7급	8·9급
해양수산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 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건	보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과,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사	응급구조사2급
의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무	치과의사		
약무	약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제			
간호	간호		간호사, 조산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직렬 \ 직류 \ 계급		5급 이상	6·7급	8·9급
환 경	수 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위생사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 기 물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수도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직렬 \ 직류 \ 계급		5급 이상	6·7급	8·9급
시 설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 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 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통시설 도시교통시 설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디자인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	통 신 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 술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비 고 :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기능직공무원

계급 / 직렬 / 직류		기능 6·7급	기능8급 이하
토목	토목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기능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보선,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전산응용건축제도, 조경, 지적)
건축	건축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도배, 철근, 방수, 실내건축)
통신	통신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사(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상담	전화상담		기능사(정보기기운용)
전기	전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능사(전기, 전기철도신호)
기계	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인쇄, 승강기)	기능사(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양화장치운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인쇄, 전자출판, 사진제판, 승강기
	영사	산업기사(영사)	기능사(영사, 광학, 사진, 사진제판)
열관리	열관리	산업기사(보일러, 공조냉동, 기계, 열관리)	기능사(보일러, 공조냉동기계, 전산응용기계제도)
운전	운전		제2종 운전면허(보통)이상
화공	화공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가스, 산업안전, 품질관리)	기능사(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가스	가스	산업기사(가스, 공업화학,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기능사(가스, 화학분석, 위험물)

계급 / 직렬 / 직류		기능 6·7급	기능8급 이하
선박항해	선박항해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급 항해사이상	기능사(동력기계정비,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6급 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선박기관	선박기관	산업기사(생산기계) 5급 기관사이상	기능사(동력기계정비,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6급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농림	영림	산업기사(종자, 조경,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기능사(종자, 원예, 버섯종균, 화훼장식,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원예		
보건	보건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위생	위생	산업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폐기물처리)	기능사(축산, 식품가공,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제과, 제빵, 조주, 세탁, 환경)
	사역		
조리	조리	위생사 1급, 위생시험사 1급, 오물처리사 1급, 영양사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오물처리사 2급
사무보조	워드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한글타자 1급, 영문타자 1급, 비서 1급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한글타자 2급, 한글타자 3급, 영문타자 2급, 영문타자 3급, 비서 2급, 비서 3급
	필기	한글속기 1급, 영문속기 1급	한글속기 2급, 한글속기 3급, 영문속기 2급, 영문속기 3급
	계리		주산2급, 주산3급, 부기2급, 부기3급
	사서		준사서
	전산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능사(전자계산기, 통신기기, 정보처리)

비 고 : 1. 철도현업직렬(직류)의 기계·전기·통신·토목·건축분야에서는 위 표중 기계·전기·통신·토목·건축직렬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각각 준용한다.

2. 위 표중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동직렬·동직류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는 같은분야(직렬·직류)의 모든 등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별표 9]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제20조제1항 관련)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처리분야	일반직6·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분야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 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비고 :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별표 10]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20조제2항 관련)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6·7급		8·9급	
가산대상 자격증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임상심리사2급	
가산비율	5%	3%	5%	3%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0]의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 및 기능직 분야의 가산비율

구 분	6·7급, 연구사, 지도사, 기능직 기능7급 이상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11]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별표 11]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20조제2항 관련)

가. 6급이하 및 기능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운 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농업기계	기 능 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공 업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산업기사자격증가산 비율 : 철도교통안전관리사
		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우더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 업	조 선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기 능 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기 능 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열관리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야 금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 능 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 업	일반화공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 능 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 산업기사 : 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기 능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잠 업	기 사 : 기 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 평가관리,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농 화 학	기 술 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기 능 사 : 폐기물처리, 식품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 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 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 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 능 사 :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수산식품가공	
	수산제조 수산물검사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양식 산업기사 : 수산제조, 식품 기 능 사 : 수산식품가공	
	수산증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수산양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교통시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 표지 기 능 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 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영양사, 위생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방사선관리, 의공 기 사 : 의공 산업기사 :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2급, 의지보조기기사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 (1999.3.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기·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환 경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 사 : 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광해방지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대 기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산업기사 : 조경, 산림, 환경 기 능 사 :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폐 기 물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건 기 능 사 : 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기 사 : 교통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시 설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측 지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 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자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건축,실내건축, 조경 기 능 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건축사
방송통신	통 신 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 술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 능 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기능직공무원의 각 직렬·직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정함	

비 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농촌지도	기 계 농업기계	기 술 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 능 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플랜트배관, 건축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공업연구	전 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기공사, 전기기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 능 사 :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기 능 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전기도금, 특수도금, 주조, 원형, 냉간압연, 열간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방사, 섬유공정,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 능 장 : 염색 기 사 :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염색가공,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 능 사 : 직기조정, 직물가공, 염색, 섬유제도디자인, 편물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화 공 화 학	기 술 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관리, 가스 기 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 :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 능 사 : 화학분석,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플라스틱성형가공, 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경영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 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경영, 포장 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물 리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 사 : 전자, 원자력, 열관리, 광학 산업기사 : 계량물리, 전자, 열관리	
농업연구	농식품 개발	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 : 식품, 생물공학, 축산 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영양사, 위생사
농업연구 농촌지도	작 물 농 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농산물품질관리사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농업연구	원 예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농촌지도	원 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화훼장식,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 술 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잠업곤충	기 술 사 : 생사	
농촌지도	잠 업	기 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생활	기 술 사 :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 사 :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촌생활		
농촌지도	농업경영	산업기사 : 섬유가공,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농촌지도	농촌사회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평생교육사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농업연구	농 공	기 술 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비철야금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열관리, 자동화정비, 기계설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열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지도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축산식품가공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녹지연구	임 업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 을 장 : 산림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농화학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조 경		
농촌지도	임 업		
수의연구	수 의	기 술 사 : 축산 기 사 : 축산 산업기사 : 축산 기 능 사 : 축산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농촌지도	가축위생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	
	수산자원		
어촌지도	어 촌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해양수산연구	수산양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수산양식	
	수산공학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로, 어병,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기 능 사 : 어로	
	수산가공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어병,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제조, 식품 기 능 사 : 수산식품가공	
보건연구	의 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 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 기 능 사 :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환경연구	환 경	기 술 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시설연구	토 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보선,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촌지도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설연구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능 사 :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12]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제21조제3항 관련)

직무분야 \ 임용예정직급			2급·연구관·지도관	3급·연구관·지도관	4급·연구관·지도관	5급·연구관·지도관	6급·가능직 6급이상·연구사·지도사	7급·가능직 7급이상·연구사·지도사	8급·가능직 8급	9급·가능직 9급이하
경찰공무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군인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교육공무원(사립학교교원포함)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		교수(3년이상)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초·중·고등학교교원 및 기타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별표11 적용 대상자			24호봉 이상	16호봉 이상	12호봉 이상	11호봉 이하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2 적용 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7호봉 이상	11호봉 이상	7호봉 이상	6호봉 이하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2중 전문대학 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9호봉 이상	13호봉 이상	9호봉 이상	8호봉 이하		
판사·검사			9호봉 이상	6호봉 이상	4호봉 이상					
기능직공무원							6급 이상	7급	8급	9급 이하
관련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박사학위 소지후 10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8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4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				6년	3년	3년	3년

비 고 : 1. 윗 표의 구분에 따른 당해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위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윗 표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다.

3.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자이어야 한다.[별표 13]

[별표 13]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21조제4항 관련)

1. 연구직 및 지도직외의 기술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관 련 학 과
공 업	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원자력, 조선, 조선공학
	일반전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섬 유	섬유, 방직, 제직, 염색
	일반화공	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금 속	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자 원	광산, 자원개발, 지질
농 업	일반농업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축 산	축산
해양수산	일반해양	수산, 해양
	일반수산	
시 설	일반토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 축	건축(건축설비)
	측 지	토목(토목건설)
방송통신	통 신 사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보 건	보 건	위생, 임상병리, 보건, 의학, 치의학

2. 지도직공무원

직 렬	관 련 학 과
농촌지도	농업계통(수의학포함) 식품가공, 농가정, 영양, 식품영양, 농산제조, 농화학, 아동, 가정교육, 가정복지, 주생활
어촌지도	수산, 해양

[별표 14]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21조제5항 관련)

계 급	2 급	3 급	4 급
연 구 경 력	10 년	8 년	4 년

비고 : 연구경력은 박사학위 소지 후 연구경력임

[별표 14의2]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21조제5항 관련)

계 급	·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나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다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나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연구경력	8년	4년

비고 : 연구경력은 박사학위 소지 후 연구경력임

[별표 15]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 시, 전직시험 면제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 (제25조제4항 관련)

1. 연구직공무원

연구직		기술직	
직렬	직류	직렬	직류
공업연구	기계	공업	일반기계
			농업기계
			기계운전
	전기		일반전기
	전자		전자
	금속		금속
			야금
	섬유		섬유
	화공		화공
	화학		
	물리		-
농업연구	작물	농업	일반농업
			농화학
		농촌지도	농업
	농업환경	농업	일반농업
			농화학
		농촌지도	농업
	작물보호	농업	일반농업
			식물검역
		농촌지도	농업
	농업경영	농업	일반농업
		농촌지도	농업
			농업경영
	잠업곤충	농업	잠업
		농촌지도	잠업
	원예	농업	일반농업
			농화학
		농촌지도	농업
			원예

연구직		기술직	
직렬	직류	직렬	직류
농업연구	생명유전	농업	일반농업
			농화학
	농촌생활	농업	일반농업
		농촌지도	농촌사회
			농촌생활
	축산	농업	축산
		농촌지도	축산
	농공	공업	농업기계
		시설	농업토목
		농촌지도	농업기계
			농업토목
녹지연구	임업	임업	전직류
	조경	농촌지도	임업
수의연구	수의	수의	수의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환경	수질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촌
	수산자원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촌
	수산양식	해양수산	수산증식
		어촌지도	어촌
	수산공학	해양수산	어로
		어촌지도	어촌
	수산가공	해양수산	수산제조
			수산물검사
		어촌지도	어촌
	수산경제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촌
보건연구	의학	의무	일반의무
			치무
	약학	약무	약무
			약제
	공중보건	보건	보건
		식품위생	식품위생
환경연구	환경	환경	전직류
시설연구	토목	시설	일반토목
			농업토목
	건축		건축

2. 지도직공무원

지도직		기술직	
직렬	직류	직렬	직류
농촌지도	농업	농업	일반농업
		농업연구	작물
			작물보호
			농업환경
			농업경영
			원예
	농업경영	농업연구	농업경영
	임업	녹지	전직류
		녹지연구	임업
			조경
	잠업	농업	잠업
		농업연구	잠업곤충
	원예	농업연구	원예
	축산	농업	축산
		농업연구	축산
	가축위생	수의	수의
		수의연구	수의
	농촌사회	농업연구	농촌생활
	농업기계	공업	농업기계
		농업연구	농공
	농업토목	시설	농업토목
		농업연구	농공
	농촌생활	농업연구	농촌생활
어촌지도	어촌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중식
			어로
			수산물검사
		해양수산연구	전직류

[별표 1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표

(제30조제1항 관련)

계 급	연 구 직	지 도 직
2 급	[별표 2] 제1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및 동표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3 급	[별표 2]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별표 2의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4 급	[별표 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별표 2의2] 제1호 나목,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5 급	연구관으로 재직한 기간	지도관으로 재직한 기간
6 급	연구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지도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7 급	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	지도사로서 재직한 기간
8 급		
9 급		

비고 : [별표 2], [별표 2의2]는 각각 연구및지도직규정의 별표를 말한다.

[별표 17]

특수경력직 및 다른종류의 경력직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표

(제30조제2항 관련)

<table>
<tr><th>상당계급
구분</th><th>5급</th><th>6급·
기능6급 이상</th><th>7급·
기능7급</th><th>8급·
기능8급</th><th>9급·
기능9급 이하</th></tr>
<tr><td rowspan="2">일반직 공무원</td><td>5급</td><td>6급</td><td>7급</td><td>8급</td><td>9급</td></tr>
<tr><td>연구관
지도관</td><td colspan="2">연구사
지도사</td><td></td><td></td></tr>
<tr><td>기능직 공무원</td><td></td><td>기능 6급 이상</td><td>기능 7급</td><td>기능 8급</td><td>기능 9급 이하</td></tr>
<tr><td>경찰 공무원</td><td>경 정</td><td>경감·경위</td><td>경 사</td><td>경 장</td><td>순 경</td></tr>
<tr><td>소방 공무원</td><td>소 방 령
지방소방령</td><td>소 방 경
소 방 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td><td>소 방 장
지방소방장</td><td>소 방 교
지방소방교</td><td>소 방 사
지방소방사</td></tr>
<tr><td>군 인</td><td>대 위</td><td>중 위</td><td>소 위
준 위
원 사</td><td>상 사
중 사</td><td>하 사</td></tr>
<tr><td>군 무 원</td><td>5급</td><td>6급</td><td>7급</td><td>8급</td><td>9급</td></tr>
<tr><td>국가정보원 직원</td><td>5급</td><td>6급
기능 6급 이상</td><td>7급
기능 7급</td><td>8급
기능 8급</td><td>9급
기능 9급 이하</td></tr>
<tr><td>별정직 공무원</td><td>5급 상당</td><td>6급 상당</td><td>7급 상당</td><td>8급 상당</td><td>9급 상당</td></tr>
<tr><td>고용직 공무원</td><td></td><td></td><td></td><td></td><td>고용직</td></tr>
<tr><td>계약직 공무원</td><td>가급</td><td>나급</td><td>다급</td><td>라급</td><td>마급</td></tr>
</table>

[별표 18]

겸임 예정직급 기준표(제33조 관련)

임용예정 계급		2급·연구관·지도관	3급·연구관·지도관	4급·연구관·지도관	5급·연구관·지도관	6급·연구사·지도사	7급·연구사·지도사	8급	9급
교육공무원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사립학교 및 동부설연구소의 교원 포함)	교수	교수 부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수 전임강사(2년이상)	전임강사			
	고등학교			24호봉 이상의 교원	16호봉 이상의 교원	12호봉 이상의 교원	11호봉 이하의 교원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단체		이사(3년이상)	이사	부장	과장(차장)	계장(대리)	평사원(3년이상)	평사원	

[별표 19]

일반직(기능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 (제32조 관련)

1. 5급부터 9급까지

계급 /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전산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 전문가)
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공업(기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계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 선박설계, 소음진동, 선박건조, 선박기계) 운송용조종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소음진동, 기계분야> 품질관리, 조선, 선박기계, 반도체설계, 무선설비, 방송통신,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정비, 가스)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 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소음진동, 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교통, 조선, 생산기계)

계급 /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공 업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원자력, 열관리)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열관리)
공 업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공 업 (섬 유)	기술사(방사, 제포,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사(방사, 방직, 염색, 가공, 의류, 품질관리, 산업안전)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방사, 섬유기계, 방직,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품질관리, 산업안전)
공 업 (화 공) (가 스)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공 업 (자 원)	기술사(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해양, 응용지질, 지질 및 지반)	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산업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 업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생사)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농 업 (축 산)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경영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수 의	수의사		
해양 수산 (수 산)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항로표지,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항로표지, 수질환경, 식품)

계급 /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해양 수산(선 박)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1·2급항해사, 1·2급기관사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방사선관리)	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기사(응급구조사 1급, 의지·보조기)	산업기사(응급구조사 2급)
의 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호사, 조산사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고분자제품,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기능장(산림) 위생사	산업기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항 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자가용조종사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건축사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통) 기능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지적기능, 교통)

계급 /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시 설 (토목, 수도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시 설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시 설 (교 통)	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	기사(교통, 도시계획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건설안전)	산업기사(교통, 조경,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철도보선,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방송통신 (통 신 사)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방송통신 (통신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무선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전파전자)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방송통신 (전자통신 기 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통신, 통신선로)

2. 연구사

계급 / 직렬	연 구 사
공 업 연 구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항공기관, 항공기체, 방사, 제포,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 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 방사선 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 항공, 방사, 방직, 염색가공, 의류,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원자력, 열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광학, 승강기, 식품)
농 업 연 구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생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메카트로닉스,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농 업 연 구 (잠업곤충)	기술사(생사)
농 업 연 구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명공학) 수의사
농 업 연 구 (농 공)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유체기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도시계획,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농업연구 (농식품 개발)	기술사(식품, 농화학, 축산) 기 사(식품, 생물공학, 축산) 영양사, 위생사
녹 지 연 구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 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해 양 수 산 연 구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생명공학)

계급 / 직렬	연 구 사
보건연구	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 기 사(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환경연구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 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시설연구(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지반, 교통) 기 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시설연구(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3. 지도사

계급 / 직렬	지 도 사
농촌지도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사,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 사(종자, 시설원예,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어촌지도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 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비고 : 영 제55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 신규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점 평정을 할 수 없다.

4. 기능직

구분 / 직렬	기능7급 이상	기능8급 이하
토 목	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사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 신	기술사(정보통신) 기 사(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전자)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무선설비,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기 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 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 기 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 <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구분 / 직렬	기능7급 이상	기능8급 이하
화 공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 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 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가 스	기술사(가스, 화학장치설비, 화공안전) 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 기능장(가스, 위험물관리)	산업기사(가스, 위험물관리고분자제품제조)
선 박, 선박기관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기 사(조선, 일반기계, 항로 표지) 1·2·3·4급 항해사 1·2·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농 림	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생사, 조경, 식품) 기 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식품, 생물공학)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조경, 식품)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 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위 생	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기 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위생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산업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오물처리사 2급

비고: 영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에 위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 신규임용시에 위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대하여는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별지 제1호서식]

응 시 원 서(원본)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나는 ①제 회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응시자격 및 가산특전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table>
<tr><td rowspan="8">수입증지
첨부란</td><td colspan="3">②주 소</td><td colspan="4"></td><td colspan="3">③전 화 :
핸드폰 :</td></tr>
<tr><td colspan="3">④경 력</td><td colspan="7">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종사)</td></tr>
<tr><td rowspan="2">⑤선 택
과 목</td><td>선택1</td><td>선택2</td><td>선택3</td><td rowspan="2">⑥
가 산
기표란</td><td>자격1</td><td>자격2</td><td>자격3</td><td>⑦취업보호
취업지원</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대상자</td></tr>
<tr><td colspan="2">⑧응 시
계 급</td><td colspan="2">급</td><td rowspan="2">⑩성명</td><td colspan="3">(한 글)</td><td rowspan="3">⑫응시자 우무인</td></tr>
<tr><td colspan="2">⑨응 시
직 렬</td><td colspan="2">직
( )</td><td colspan="3">(한 자)</td></tr>
<tr><td colspan="2">※응시
번호</td><td colspan="2"></td><td>⑪ 주민등록
번 호</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9">간
인</td></tr>
<tr><td rowspan="4"></td><td colspan="2">⑬응 시
계 급</td><td colspan="2">급</td><td colspan="4">응시원서(부본)
⑮제 회 시험</td><td rowspan="3">⑱ 사 진
반명함판
(3.5㎝×4.5㎝)</td></tr>
<tr><td colspan="2">⑭응 시
직 렬</td><td colspan="2">직
( )</td><td>⑯성명</td><td colspan="3">(한글)
(한자)</td></tr>
<tr><td colspan="2">※응시
번호</td><td colspan="2"></td><td>⑰ 주민등록
번 호</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9">간
인</td></tr>
<tr><td rowspan="4">※</td><td colspan="2">⑲응 시
계 급</td><td colspan="2">급</td><td colspan="4">응 시 표
㉒제 회 시험</td><td rowspan="3">㉕ 사 진
반명함판
(3.5㎝×4.5㎝)</td></tr>
<tr><td colspan="2">⑳응 시
직 렬</td><td colspan="2">직
( )</td><td>㉓성 명</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 rowspan="2">㉑선 택
과 목</td><td>선택1</td><td>선택2</td><td>선택3</td><td rowspan="2">㉔주민등록
번 호</td><td colspan="3" rowspan="2"></td></tr>
<tr><td></td><td></td><td></td></tr>
<tr><td colspan="2">※응시
번호</td><td colspan="2"></td><td colspan="5">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td></tr>
</table>

1203 - 1 1A 190㎜×268㎜ 인쇄용지(특급)120g/㎡

1978. 10 . 13 승인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 응시원서는 자필로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할 것.

1. 시험회수 및 시험명 ①, ⑮, ㉒…당해 시험시행공고에 따라 그 시험회수 및 시험명칭을 기재할 것.
2. 출원자성명 ⑩, ⑯, ㉓… 정자로 기재하되, ⑩, ⑯은 한글과 한자로 병서할 것.
3. 주소 ②… 현재 거주하는 곳(번지, 통, 반 명기)을 기재할 것.
4. 경력 ④… 공무에 종사한 최종경력(군 경력도 포함)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하되, 근무관서명 및 직급을 명기할 것.
5. 선택과목 ⑤… 선택과목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2개과목 이상인 경우 1, 2, 3으로 표시된 선택순서 표기에 따를 것.
6. 가산기표란 ⑥⑦… 6급이하의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시행 공고문을 참조하여 해당란에 그 자격 및 시행기관을 기재하거나 취업보호대상자의 해당표시(√표)를 할 것.

   ※ √표 대상자 :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7. 응시계급 ⑧, ⑬, ⑲… 응시하는 계급을 기재할 것.
9. 응시직렬 ⑨, ⑭, ⑳… 응시하고자 하는 직렬을 기재하고 ( )안에는 당해 직렬중 직류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응시직류까지 명기할 것.
10. 응시번호란…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표란에 기재하지 말 것.
11. 사진란 ⑱, ㉕…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4.5㎝) 탈모 상반신 사진(동일원판의 것으로서 얼굴부분이 커야 함)을 풀로 첨부할 것.
12. 우무인 ⑫… 시험시행일에 응시자로부터 우무인을 받으므로 출원 시에는 찍지 말 것.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부호 및 번호) 및 사진 위의 철압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진(원서첨부사진과 동일원판의 것) 1매를 지참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3.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흑색 또는 청남색 필기구만을 지참(휴대폰 등 지참 불가)하여야 한다.
4. 시험 당일은 매시험 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책상위 바른편에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답안작성은 답안지에 기재된 작성요령, 주의사항 및 감시관의 지시에 따르되, 동일한 색의 필기도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시험실내에서의 흡연, 담화, 물품의 대여 등은 일체 금하며, 일단 입실한 자는 당해 시험시간 종료 시까지 임의 퇴장할 수 없다.
7. 부정행위자, 규칙위반자 또는 주의사항이나 감시관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퇴장시키고, 당해인의 시험을 무효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처분한다.
8. 기타 자세한 것은 감시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년도 제 회 ○○○○ 면접시험 평정표

필기적 감재정 용란	(예 시 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합 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불합격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3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⑥응시연도 및 회수	( )년도제 회
응시지구(기호) 응시번호	지구 번
직급별	급 직

※등록번호	제 회 번
※ 급	직

①성 명 한글 (한문)	②생년월일 . . .(세)	④성 별 남 ☐ 여 ☐	⑤희망지역 제1지역 시 군	※등록심사 사진대조	서류심사
	③주민등록번호		제1지역 시 군	㊞	㊞

⑦현 주 소		(사진부착)
⑧병 역	필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제대연월일 . . .
	미필사유	

⑨ 학 력

부터	까지	학 력	전공·부문·과목

⑩자 격 면 허		⑪상 벌	
연 월 일	종 별	연 월 일	사 항

⑫특 기	⑬취 미	⑭운 동	⑮종 교

⑯ 경 력

부터	까지	경 력 사 항	발령청

※

(※ 응시원서 부본 첨부란)

⑰ 재산상황 가. 부동산(평) 나. 동 산(원)

⑱ 보증인 또는 후원자

성 명	직 업	현 주 소

⑲ 가족상황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성별	연령	직업	최 종 학 력	비고

첨 부 서 류	호 적 초 본	신원증명원	학력증명서	병적증명서	신원진술서
통 수	통	통	통	통	통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넌 월 일

출원자 (인)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⑳ 우무인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 등록장소

시・도, 시・군・구 ○○과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2) 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4)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5)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6) 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7)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8) 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 등록원서 제출방법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 원서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 )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 각 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① 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② 생 년 월 일 …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숫자로 기재한다.

③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④ 성 별 … 남·녀 해당 □에 √표를 한다.

⑤ 희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⑥ 시험합격구분 … (예)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⑦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한다.

⑧ 병 역 … 미필 란에는 연령미달, 영장미교부, 기피, 기피자수후 영장미교부, 징집연기중, 병역면제처분 기타 사유를 기입한다.

⑨ 학 력 … 중학교 이상의 학력만을 기입할 것이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입한다.

⑩ 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입한다.

⑪ 상 벌 …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입한다.

⑫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입한다.

⑬ 재 산 상 황 … 부동산은 가옥·임야·전답 등으로 구분하여 평수로, 동산은 금액으로 기입한다.

⑭ 가 족 상 황 … 가족명은 한글로 쓰고 직업 및 최종학력을 기입한다.

⑮ 우 무 인 … 오른쪽무인(엄지손가락)을 날인한다.

6. 민간인 신원진술서 기재요령

가. 본적을 전적한 사람은 반드시 원적을 기재
(신원진술서에 만일 원적란이 없는 경우에는 가본적을 원적으로 정정하고 기재)

나. 본적은 호적과 동일하게, 현주소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소를 통·반까지 명기

다. 가족사항 중 남자 기혼자는 처가를, 여자 기혼자는 친가를, 미혼자는 미혼으로 기재

라. 보증인은 직계가족이 아닌 자로서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배경이 되는 인물)를 기재

마. 8·15이후 거주지 기재에는 기간(년월일), 거주지(번지 및 통·반까지), 당시 호주 및 전거사유를 기재하고, 현재란은 현주소와 동일하여야 하며, 전거사실이 없을 경우 현재 본적·주소를 기재한다.

바. 해당없는 란에는 “해당없음”을 기재한다.

※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필증을 추후 본인에게 송부한다.

[별지 제4호서식]

임 용 후 보 자 명 부

① 등록 번호	② 등록 연월일	③ 성명	④ 생년 월일	⑤ 성별	⑥ 현주소	⑦ 최종 출신 학교명	⑧ 특기	⑨ 병열필 미필	⑩ 희망 기관	⑪신원조사			⑫추 천					⑬임 용			비고
										의뢰	회보	송부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연월일	직명	근무 관서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별지 제5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 . . .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 통보

(문서분류기호)로 추천하신 공무원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를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계 급	직 렬	추천인원수	임용자수 (임용예정자수)	비 고

첨 부 : 1. 임용자 명단 부
2. 임용불응자 명단 부
3. 미임용자 관계서류 부

(발 신 기 관 명) 직 인

0202-1-9A
1969. 12. 3 승인

190㎜×268㎜
(신문용지 50g/㎡)

1. 임용자 명단

등록번호	성명	임 용 연 월 일	임 용 직 급	임 용 직 위	비 고

0202-1-10A
1969. 12. 3 승인

190㎜×268㎜
(신문용지 50g/㎡)

2. 임용불응자 명단

등록번호	성 명	임 용 불 응 사 유

비 고 : 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0202-1-11A
1969. 12. 3 승인

190㎜×268㎜
(신문용지 50g/㎡)

[별지 제6호서식]

실 무 수 습 계 획 서

성 명		성 별	남·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시험구분	(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합격일자	년 월 일	유효기간	년 월 일	
학 력				경력				
임용상황	임용일자	임용부서	시보시간		시보단축기간	시보단축사유	보직부여	
	년 월 일		년 월 일 월간 년 월 일		월		일자 : 년 월 일 직위 :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	배치부서							
	수습 계획 기간	. . . ~ . . . (일간)						
	실지 수습 기간	. . . ~ . . . (일간)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홍 섭

2013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중구규칙 제787호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천광역시 중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및 별표 1의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3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①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2.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 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 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 1 적용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게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징계 등 사건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 등 사건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 당시의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와 기능직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청백봉사상을 받은 공적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5조(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인사위원회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6조 제2항에 따른 징계 등 의결서(이하 "징계 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 등의결서의 의결 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제7조(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을 때 청렴의무 위반 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 4와 별표1의2를 각각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에 별표 2에 따라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 등 혐의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음주운전 횟수 산정의 적용례) 제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1의2는 이 규칙 시행 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및 별표 1의2의 징계부가금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천광역시 중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및 별표 1의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3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인사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과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①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2.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 1 적용	**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①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2.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 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 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 1 적용

현 행	개 정 안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징계 등 사건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 등 사건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 사건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게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징계 등 사건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 등 사건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 사건
제4조(징계의 감경) ①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지방공무원법」제7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현 행	개 정 안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상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와 기능직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의 청장(차관급 상당기관장을 포함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6917호)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청백봉사상을 받은 공적 ②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률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3"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당시의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와 기능직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청백봉사상을 받은 공적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5조(징계의 가중) ①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이내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조(징계의 가중)** ①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인사 위원회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할 때에는「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 등 의결서(이하 "징계 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 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제6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인사 위원회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 등 의결서(이하 "징계 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 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제7조(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기재요령) ①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을 때 청렴의무 위반 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 4와 별표 5를 각각 적용한다.	**제7조(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을 때 청렴의무 위반 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 4와 별표 1의2를 각각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에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 등 혐의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기타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 의결을 요청 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에 별표 2에 따라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 등 혐의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제4조제2항에따른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별표 1]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 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성폭력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라. 음주운전	별표 1의2와 같음			
마.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 비고 :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비위의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별표 1의2] 〔별표 5에서 이동 전부개정〕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table>
<tr><th>유 형 별</th><th>징계요구
(처리기준)</th><th>징계기준</th><th>비 고</th></tr>
<tr><td>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td><td>경징계</td><td>견책-감봉</td><td rowspan="10">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 경우 별도로 아래의 기준 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5. 음주운전 횟수에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td></tr>
<tr><td>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td><td rowspan="2">경·중계</td><td>감봉-정직</td></tr>
<tr><td>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td><td>감봉-정직</td></tr>
<tr><td>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td><td rowspan="6">중징계</td><td>정직-강등</td></tr>
<tr><td>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td><td>해임-파면</td></tr>
<tr><td>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td><td>정직-파면</td></tr>
<tr><td>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td><td>강등-해임</td></tr>
<tr><td>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td><td>정직-해임</td></tr>
<tr><td>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td><td>정직-해임</td></tr>
</table>

[별표 1의3] 〔별표 1의2에서 이동〕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금품·향응 수수	금품·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향응 수수액의 1~2배
2. 공금 횡령·유용	공금 횡령·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1배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별표 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3조 관계)

업무와의 관련도 /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 사항				
· 중요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4	3	2	1
· 일반적인 사항	3	1	2	4
○ 단순·반복업무				
· 중요사항	1	2	3	4
· 경미사항	1	2	3	
○ 단독행위	1	2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별표 3]

징계의 감경기준 (제4조 관계)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4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파 면	해 임
해 임	강 등
강 등	정 직
정 직	감 봉
감 봉	견 책
견 책	불문(경고)

[별표 4]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

<table>
<tr><td rowspan="2">구 분</td><td colspan="2">직무 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td><td colspan="2">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td><td colspan="2">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td></tr>
<tr><td>수 동</td><td>능 동</td><td>수 동</td><td>능 동</td><td>수 동</td><td>능 동</td></tr>
<tr><td>100만원 미만</td><td>경징계</td><td>경징계</td><td>경징계</td><td>중징계</td><td colspan="2" rowspan="3">중징계</td></tr>
<tr><td>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td><td>경징계
·
중징계</td><td>중징계</td><td colspan="2" rowspan="2">중징계</td></tr>
<tr><td>300만원 이상</td><td colspan="2">중징계</td></tr>
</table>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홍 섭

2013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중구규칙 제788호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용계약서) ①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계약직공무원(이하 “계약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채용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계약당사자 쌍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서식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의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서의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조건에 관한 특례’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며, 각 장 사이에는 계약당사자가 간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3조(채용절차)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하 “근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채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용한다.

1. 채용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채용계약서(별지 제2호서식)
3. 성과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제4조(채용구비서류) ① 계약직공무원 채용구비서류는「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공무원 신규임용에 있어서의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의 채용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채용기간연장 승인 신청) 근무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영 제8조에 따른 근무실적평가결과 등을 첨부하여 채용기간연장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채용계약의 해지) 계약직공무원이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용계약해지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근무기관의 장에게 채용계약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근무기관의 장은 해지신청에 따른 처리결과를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실적평가) ① 영 제8조에 따른 근무실적평가는 채용 후 매 1년마다 정기평가하되, 계약기간 연장·연봉액의 조정, 그 밖에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평가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실적평가의 평가자,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계약의 연장 및 해지, 연봉액의 조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실적평가위원회 설치 등) ① 제7조에 따른 근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계약직공무원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계약직공무원 근무기관의 장, 인천광역시 중구 인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영 별표 1 중 ‘라 급’ 이하의 보수를 받는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를 위한 위원회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보수 결정) ①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계약직공무원 연봉 한계액 범위에서 정하되,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액은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을 원칙으로 한다.

②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받아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을 조정하되, 이 경우 전체 공무원의 봉급 인상율을 감안하여 그 인상율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영 별표 1 중 '가 급'과 실적의 우수성, 새로운 자격의 취득 등으로 봉급인상 기준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근무실적평가결과 근무실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근무실적평가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봉급인상기준을 초과 조정하거나 또는 동결·삭감할 수 있다.

④ 계약직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이하 "계약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채용계약, 채용계약의 연장, 해지, 근무실적평가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용계약서) ①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가 쌍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서식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영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에 관한 특례"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며 각 매간에는 계약당사자의 간인을 날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2조(채용계약서)** ①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계약직공무원(이하 "계약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채용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계약당사자 쌍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서식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서의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에 관한 특례'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며, 각 장 사이에는 계약당사자가 간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채용승인 신청등)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하 "근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채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용하여야 한다. 1. 채용계획서 2. 채용계약서(안) 3. 성과계획서 4. **예산서 사본** 5. 기타 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등)	**제3조(채용절차)**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하 "근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채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용한다. 1. 채용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채용계약서(별지 제2호서식) 3. 성과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삭 제>** 4. 그 밖에 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4조(채용구비서류) ①계약직공무원 채용구비서류는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공무원 신규임용에 있어서의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의 채용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채용구비서류)** ① 계약직공무원 채용구비서류는「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공무원 신규임용에 있어서의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의 채용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채용기간 연장승인 신청) 근무기관의 장은 영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 평가결과 등을 첨부하여 채용기간연장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채용기간연장 승인 신청)** 근무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영 제8조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결과 등을 첨부하여 채용기간연장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채용계약의 해지) 계약직공무원이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계약해지예정일로부터 1월이전에 근무기관의 장에게 채용계약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채용계약의 해지)** 계약직공무원이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용계약해지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근무기관의 장에게 채용계약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근무기관의 장은 해지신청에 따른 처리결과를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실적평가) ①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 평가는 채용후 매 1년마다 정기평가하되, 계약은 연장·봉급액의 조정, 기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 평가하고,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근무실적평가자,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근무실적평가 결과는 계약의 연장 및 해지, 봉급액의 조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실적평가)** ① 영 제8조에 따른 근무실적평가는 채용 후 매 1년마다 정기평가하되, 계약기간 연장·연봉액의 조정, 그 밖에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 평가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실적평가의 평가자,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계약의 연장 및 해지, 연봉액의 조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근무실적평가위원회설치)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근무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계약직공무원 근무부서의 장, 인천광역시중구인사위원 중 당연직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라 호 이하의 보수를 받는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를 위한 위원회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근무실적평가위원회 설치 등)** ① 제7조에 따른 근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계약직공무원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계약직공무원 근무기관의 장, 인천광역시 중구 인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영 별표 1 중 '라 급' 이하의 보수를 받는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를 위한 위원회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보수결정) ①계약직공무원의 봉급지급액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상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 범위내에서 정하되,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최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받아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보수 결정)** ①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계약직공무원 연봉 한계액 범위에서 정하되,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액은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을 원칙으로 한다. ②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받아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을 조정하되, 이 경우 전체 공무원의 봉급인상율을 감안하여 그 인상율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채용구분 가 호와 실적의 우수성, 새로운 자격의 취득 등으로 봉급인상 기준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근무실적평가결과 근무실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근무실적평가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봉급인상기준을 초과 조정하거나 또는 동결·삭감할 수 있다. <신 설>	③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을 조정하되, 이 경우 전체 공무원의 봉급 인상율을 감안하여 그 인상율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영 별표 1 중 '가 급'과 실적의 우수성, 새로운 자격의 취득 등으로 봉급인상 기준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근무실적평가결과 근무실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근무실적평가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봉급인상기준을 초과 조정하거나 또는 동결·삭감할 수 있다. **④ 계약직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획서 (예시)

1. 채용예정분야

2. 사업의 필요성

3. 채용예정분야의 직무내용 및 특성
   - ○ 직무내용
   - ○ 직무특성

4.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건
   - ○ 필요지식
   - ○ 필요학력(관련 전공분야 등)
   - ○ 경력요건
   - ○ 요구자격증
   - ○ 기타 요구되는 능력(책임도, 곤란도 등)

5. 채용 신분 및 "월 봉급액"

[별지 제2호서식]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계약직공무원 채용기관의 장을 "갑"이라 하고, 계약직공무원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갑)
(을)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제2조(담당업무 및 성과계획) 계약기간 동안 "을"이 담당할 업무 및 성과목표는 별첨 성과계획서와 같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주당 근무시간) 주 시간
※ 근무형태 및 요일별 근무시간(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 한함)

제5조(신분) 전임계약직공무원, 시간제계약직공무원 ○급

제6조(보수 지급액 및 보수 지급방법)
1. 연 봉
2. 수 당
3. 지급방법

제7조(근무실적평가) "갑"은 계약서 제2조에 따른 담당업무 및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하여 "을"의 근무실적을 매년 정기평가하고, 필요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할 수 있으며 계약만료 시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영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계약서 제7조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결과 불량으로 판정된 때에는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복무) “을”은 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갑”이 지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며, 「지방공무원법」 제48조부터 제59조까지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수 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 승계) “을”이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갑”이 승계한다.

제11조(그 밖의 채용조건)

1. “을”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등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을”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을”은 법령 및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12조(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3조(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에 관한 특례 등)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을” 주 소

성 명 ㊞

[별지 제3호서식]

성 과 계 획 서

1. 채용예정자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채용구분	성 명	채용계약기간	담당예정업무

2. 업무성과 목표

○ 전반적인 성과목표

(계약직공무원이 채용계약기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총괄적으로 요약 기재)

○ 전반적인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목표

① 단위목표	② 성과측정기준	③ 추진일정	④ 비 고
가) 나) 다) 라)			

① 단위목표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단위목표를 기재

② 성과측정기준 :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가능한 계량화함

③ 추진일정 : 목표과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가를 기재

④ 비 고 : 평가시 고려사항 등 기타 특이사항을 기재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수 신
참 조
제 목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승인 신청

1.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방계약직 공무원을 채용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관 채용기간	담당업무 내 용	채 용 신 분	월 보 수 (봉급,수당)	예 산 확보상황	소지자격

2. 채용의 필요성

발행기관(부서)명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홍 섭

2013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중구규칙 제789호

인천광역시중구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폐지규칙

인천광역시중구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중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홍 섭

2013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중구규칙 제790호

인천광역시중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

인천광역시중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훈 령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김 홍 섭

2013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중구훈령 제291호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3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구의 인사발령에 따라 외국도시에 해외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

제2장 공무국외여행

제3조(공무국외여행 허가) ① 구 소속 공무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 허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3장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제4조(설치) 다음 각 호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10명 이상 단체 공무국외여행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경우
   (단, 장기근속 공무원의 해외여행은 제외한다)
2.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 또는 단체가 (개인을 포함한다) 부담하는 경우(단, 국·시비 지원은 제외한다)
3. 각종 시찰·견학·자료수집 등의 연수목적 여행
4.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국장, 주민생활 지원국장, 지역개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여행 허가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무국외여행 허가부서(이하 “허가부서”라 한다)의 장이 공무국외여행 심사요청을 하는 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의결을 갈음 할 수 있다.

④ 허가부서의 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⑤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및 별표 2를 적용하며, 심사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국외여행 심사의결서(별지 제6호서식을 말한다)
2. 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별지 제7호서식을 말한다)
3. 공무국외여행 심의서(별지 제8호서식을 말한다)
4. 공무국외여행 심사조서(별지 제9호서식을 말한다)

제4장 심사절차

제8조(심사절차) ① 공무국외여행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출국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심사 의뢰해야 한다.

1. 공무국외여행심사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2.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
3. 이력서(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4. 해외여행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5. 항공운임증명서 G.T.R(별지 제5호서식을 말한다)
6. 여행방침 및 그 밖의 증빙서류

②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 통보된 여행기간 및 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여행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기의 변경 및 3일 이내의 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에게 허가권을 위임한다.

③ 여행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급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심사 결과의 결재권자는 5급 이상은 구청장, 6급 이하는 부구청장으로 한다.

제9조(서류의 보완 및 반려) ① 심사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서류를 심사한 후 미비 된 서류를 반려하거나 기일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보완을 요구받고 기일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10조(관계인 출석) ①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 심사 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제11조(허가여부 통보) 허가부서는 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재심) 주관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통보된 허가 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여행계획 사전 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여행 계획을 수립할 때 또는 중앙부처,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관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무과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구 자체계획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등의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참가하거나 해외에서 실시되는 세미나 등의 행사에 공무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가협의 단계부터 총무과와 협의해야 하며,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공무국외여행 계획을 수립할 때 공식 외국기관 방문에 따른 재외공관 협조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중앙행정기관 및 시와 협의·조정해야 한다.

제14조(여행 억제 및 제한) ① 자료 수집 또는 업무 협의 등을 이유로 한 단순한 국외여행은 구체적인 필요성을 설명하지 않으면 가급적 제한한다.
② 세미나, 심포지움 등에 초청되어 참가하는 경우 그 중요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회의규모, 성격, 내용을 분석한 결과 그 중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국제회의 참석은 가급적 억제한다. 다만, 초청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사설단체에서 모집하여 시행하는 견학, 시찰이나 각종 대회 참관, 전지훈련 등은 그 목적이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한한다.
⑤ 관련단체 또는 관계기관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국외여행은 가급적 제한한다.
⑥ 각종 건설사업, 용역, 물품구매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에 반영하여 실시하는 공무국외여행은 억제한다.

제15조(여행 목적지 심사) ① 여행 목적지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목적 수행에 꼭 필요한 국가로 제한
2. 본 목적 이외에 부수적인 목적 수행을 이유로 인접국이나 귀로에 여러 행선지를 방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격히 통제
3. 우리나라의 공관 설치 유무, 여행국의 정치·경제, 여행국의 국민 감정, 그 밖에 여행자의 신변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심사

② 여행 목적지가 미수교국인 경우에는 사전에 시를 경유하여 외교통상부 및 국가정보원과 협의해야 한다.

제16조(여행자의 선정 및 심사) ① 여행자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재의 담당 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하고, 귀국 후 상당한 기간 해당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공무원을 우선 선정하며, 여행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행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자격이 적합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여행인원은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한다.
③ 같은 목적으로 여행인원이 2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인별 수행업무가 분명해야 한다.

제17조(여행기간 및 시기 선정) ① 여행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 인정하며, 원칙적으로 왕복 소요기간을 포함하여 15일을 초과할 수없다. 다만,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충분히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하며, 이 경우 왕복에 소요되는 기간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아주지역(대양주를 포함한다): 4일 이내
2. 구미 등 그 밖의 지역: 6일 이내

② 여행 시기는 방문효과를 고려하여 적절한 때에 택해야 한다.

제18조(여행 경비) 여행 경비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비는「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출하여 지급
2. 공무 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토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초청경위) 초청에 따라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초청경위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청에 따른 여행은 구를 통하여 교섭된 것을 원칙으로 함
2.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여행은 업무에 관련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허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제20조(출국 및 귀국신고) 공무국외여행자 중 5급 이상 공무원은 구청장에게, 6급 이하 공무원은 부구청장에게 출국 및 귀국신고를 해야 한다.

제21조(외국자료 수집 및 귀국보고서 제출) ① 구청장은 공무국외여행자(이하 이 조에서 “여행자”라 한다)에게 자료수집 계획, 여행자, 여행목적, 여행지역, 여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외국 자료의 수집과제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자료수집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귀국보고서 및 수집된 자료를 본청은 해당 국·실장, 그 외 기관은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총무과장에게 제출하며, 전자문서 시스템에 등록하여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총무과장은 수집자료 등을 분석·연구·정리·보관하고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④ 여행자가 자료 및 귀국보고서를 기일 내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국외여행을 엄격히 제한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보관된 자료는 소속 직원 또는 개인에게 대출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2조(포상) 총무과장은 제출된 자료가 구정의 정책 수립과 업무 추진에 크게 공헌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행자에 대한 포상 등을 추천할 수 있다.

제23조(사후관리 등) 구청장은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그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24조(준용) 구의 행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구의 부담으로 실시하는 구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등 민간인의 국외여행은 이 규정을 따른다.

별표 1,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중구(이하 구 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구 소속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하여 3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구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외국도시에 해외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3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구의 인사발령에 따라 외국도시에 해외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
제2장 공무국외여행	제2장 공무국외여행
제3조(공무국외여행허가)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 허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공무국외여행 허가) ① 구 소속 공무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 허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현 행	개 정 안
제3장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제3장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중구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10명 이상 단체 공무국외여행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경우(단, 장기근속 공무원의 해외여행은 제외) 2.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 기관 외의 기관 또는 단체가 (개인 포함) 부담 하는 경우(단, 국·시비 지원은 제외) 3. 각종 시찰·견학·자료수집 등의 연수목적여행 4.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설치) 다음 각 호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10명 이상 단체 공무국외여행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경우(단, 장기근속 공무원의 해외여행은 제외한다) 2.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 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 또는 단체가(개인을 포함한다) 부담하는 경우(단, 국·시비 지원은 제외한다) 3. 각종 시찰·견학·자료수집 등의 연수목적 여행 4.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 한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③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 국외여행 허가담당으로 한다.	제5조(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개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여행 허가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사위원회 운영) 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무국외여행 허가부서의 장(이하 “허가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공무국외여행 심사요청을 하는 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④허가부서의 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⑤공무국외여행심사 기준은 제15조부터 제19조 및 “별표 2”를 적용하며, 심사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국외여행 심사의결서 : “별지 제6호 서식” 2. 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 : “별지 제7호 서식” 3. 공무국외여행 심의서 : “별지 제8호 서식” 4. 공무국외여행 심사조서 : “별지 제9호 서식”	제7조(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무국외여행 허가부서(이하 “허가부서”라 한다)의 장이 공무국외여행 심사요청을 하는 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④ 허가부서의 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⑤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및 별표 2를 적용하며, 심사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국외여행 심사의결서(별지 제6호 서식을 말한다) 2. 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별지 제7호서식을 말한다) 3. 공무국외여행 심의서(별지 제8호서식을 말한다) 4. 공무국외여행 심사조서(별지 제9호서식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장 심사절차	제4장 심사절차
제8조(심사절차) ①소속 기관장(실·과·소·동장을 포함한다)은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출국 3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심사 의뢰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절차) ① **공무국외여행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출국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심사 의뢰해야 한다.
1. 공무국외여행심사 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	1. 공무국외여행심사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2. 공무국외여행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2.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
3. 이력서 (별지 제3호 서식)	3. 이력서(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4. 해외여행자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4. 해외여행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5. 항공운임증명서(G.T.R)(별지 제5호서식)	5. 항공운임증명서G.T.R(별지 제5호서식을 말한다)
6. 여행방침 및 기타 증빙서류	6. 여행방침 및 그 밖의 증빙서류
② 삭 제	
③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통보된 여행기간 및 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여행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기의 변경 및 3일 이내의 기간연장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에게 허가권을 위임한다.	②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 통보된 여행기간 및 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여행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기의 변경 및 3일 이내의 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에게 허가권을 위임한다.
④여행하고자 하는 자의 직급에 따른 여행방침서의 결재권자는 5급 이상은 구청장, 6급 이하는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여행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급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심사 결과의** 결재권자는 5급 이상은 구청장, 6급 이하는 부구청장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서류의 보완 및 반려) ①공무 국외여행 심사는 제8조의 규정과 관련된 서류를 심사한 후 미비된 서류는 이를 반려하거나 기일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보완을 요구받고 기일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9조(서류의 보완 및 반려) ① 심사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서류를 심사한 후 미비 된 서류를 반려하거나 기일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 보완을 요구받고 기일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10조(관계인 출석) ①공무국외여행 심사시 필요한 경우 심사 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의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제10조(관계인 출석) ①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 심사 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제11조(허가여부 통보) 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 허가된 사실은 당해 요청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허가여부 통보) 허가부서는 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재심) 주관부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허가 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재심) 주관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통보된 허가 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여행계획 사전협의) ①주관부서장은 공무국외여행 계획 수립시 또는 중앙부처, 시의 주관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무과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여행계획 사전 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여행 계획을 수립할 때 또는 중앙부처,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관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무과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구 자체계획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등의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참가하거나 해외에서 실시되는 세미나 등의 행사에 공무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가 협의단계부터 총무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공무국외여행 계획 수립 시 공식 외국기관 방문에 따른 재외공관 협조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인천광역시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조정 하여야 한다.	② 구 자체계획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등의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참가하거나 해외에서 실시되는 세미나 등의 행사에 공무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가협의단계부터 총무과와 협의해야 하며,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공무국외여행 계획을 수립할 때 공식 외국기관 방문에 따른 재외공관 협조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중앙행정기관 및 시와 협의·조정해야 한다.
제14조(여행억제 및 제한) ①자료 수집 또는 업무협의등을 이유로 한 단순한 1국외여행은 구체적인 필요성이 소명되지 아니하는 한 가급적 제한한다. ②세미나, 심포지움등에 초청되어 참가하는 경우 그 중요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③회의규모, 성격, 내용을 분석한 결과 그 중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국제회의 참석은 가급적 억제한다. 다만, 초청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사설단체에서 모집하여 시행하는 견학, 시찰이나 각종대회 참관, 전지훈련등은 그 목적이 해당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한한다. ⑤관련단체 또는 유관기관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국외여행은 가급적 제한한다. ⑥각종 건설사업, 용역, 물품구매 계약시 계약조건에 반영하여 실시하는 공무국외여행 억제한다.	제14조(여행 억제 및 제한) ① 자료 수집 또는 업무 협의 등을 이유로 한 단순한 국외여행은 구체적인 필요성을 설명하지 않으면 가급적 제한한다. ② 세미나, 심포지움 등에 초청되어 참가하는 경우 그 중요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회의규모, 성격, 내용을 분석한 결과 그 중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국제회의 참석은 가급적 억제한다. 다만, 초청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사설단체에서 모집하여 시행하는 견학, 시찰이나 각종 대회 참관, 전지 훈련 등은 그 목적이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한한다. ⑤ 관련단체 또는 관계기관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국외여행은 가급적 제한한다. ⑥ 각종 건설사업, 용역, 물품구매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에 반영하여 실시하는 공무국외여행은 억제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여행 목적지 심사) ① 여행목적지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행목적 수행에 꼭 필요한 국가로 제한한다. 2. 본 목적이외에 부수적인 목적 수행을 이유로 인접국이나 귀로에 여러 행선지를 방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격히 통제한다. 3. 우리나라의 공관설치 유무, 여행국의 정치·경제, 여행국의 대 한국감정, 기타 여행자의 신변안전 문제등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②여행 목적지가 미수교국인 경우에는 사전에 시를 경유하여 외교통상부 및 국가정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여행 목적지 심사) ① 여행 목적지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목적 수행에 꼭 필요한 국가로 제한 2. 본 목적 이외에 부수적인 목적 수행을 이유로 인접국이나 귀로에 여러 행선지를 방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격히 통제 3. 우리나라의 공관 설치 유무, 여행국의 정치·경제, 여행국의 국민 감정, 그 밖에 여행자의 신변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심사 ② 여행 목적지가 미수교국인 경우에는 사전에 시를 경유하여 외교통상부 및 국가정보원과 협의해야 한다.
제16조(여행자의 선정 및 심사) ①여행자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재의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하고, 귀국 후 상당한 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를 우선하며, 여행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행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적격자와 교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여행인원은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한다. ③동일 목적으로의 여행인원이 2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인별 수행업무가 분명하여야 한다.	제16조(여행자의 선정 및 심사) ① 여행자의 선정에 있어서는 현재의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하고, 귀국 후 상당한 기간 해당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공무원을 우선 선정하며, 여행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행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자격이 적합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여행인원은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한다. ③ 같은 목적으로 여행인원이 2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인별 수행업무가 분명해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여행기간 및 시기선정) ①여행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 인정하며, 원칙적으로 왕복소요기간을 포함하여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충분히 그 사유를 소명되어야 하며, 이 경우 왕복에 소요되는 기간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아주지역(대양주 포함) : 4일 이내 2. 구미등 기타지역 : 6일 이내 ②여행시기는 방문효과를 고려하여 적절한 때에 택하여야 한다.	제17조(여행기간 및 시기 선정) ① 여행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 인정하며, 원칙적으로 왕복 소요기간을 포함하여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충분히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하며, 이 경우 왕복에 소요되는 기간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아주지역(대양주를 포함한다): 4일 이내 2. 구미 등 그 밖의 지역: 6일 이내 ② 여행 시기는 방문효과를 고려하여 적절한 때에 택해야 한다.
제18조(여행경비) 여행경비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비의 산출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2.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를 여행토록 하는 경우 여비지급이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여행 경비) 여행 경비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비는「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산출하여 지급 2. 공무 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토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초청경위) 초청에 의하여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초청경위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초청에 의한 여행은 소속기관장을 통하여 교섭된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여행은 업무에 관련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초청경위) 초청에 따라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초청경위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청에 따른 여행은 구를 통하여 교섭된 것을 원칙으로 함 2.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여행은 업무에 관련된 경우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허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출국 및 귀국신고) 공무국외여행자 중 5급이상 공무원은 구청장에게, 6급 이하 공무원은 부구청장에게 출국 및 귀국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출국 및 귀국신고) 공무국외여행자 중 5급 이상 공무원은 구청장에게, 6급 이하 공무원은 부구청장에게 출국 및 귀국신고를 해야 한다.
제21조(외국자료 수집 및 귀국보고서 제출) ①구청장은 공무국외여행자에게 자료수집계획, 여행자, 여행목적, 여행지역, 여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외국 자료의 수집과제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자료수집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여행자는 귀국 후 30일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귀국보고서 및 수집된 자료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총무과장에게 제출하며, 전자문서 시스템에 등록하여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③총무과장은 수집자료등을 분석· 연구· 정리 및 보관하고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여행자가 부과된 자료 및 귀국 보고서를 기일내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국외여행을 엄격히 제한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된 자료는 소속직원 또는 개인에게 대출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외국자료 수집 및 귀국보고서 제출) ① 구청장은 공무국외여행자(이하 이 조에서 “여행자”라 한다)에게 자료수집 계획, 여행자, 여행목적, 여행지역, 여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외국 자료의 수집과제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자료수집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귀국보고서 및 수집된 자료를 **본청은 해당 국·실장, 그 외 기관은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총무과장에게 제출하며, 전자문서 시스템에 등록하여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총무과장은 수집자료 등을 분석·연구·정리·보관하고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④ 여행자가 자료 및 귀국보고서를 기일내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국외여행을 엄격히 제한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보관된 자료는 소속 직원 또는 개인에게 대출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2조(포상) 총무과장은 제출된 자료가 구정의 정책수립과 업무추진에 크게 공헌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행자에 대한 포상등을 추천 할 수 있다.	제22조(포상) 총무과장은 제출된 자료가 구정의 정책 수립과 업무 추진에 크게 공헌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행자에 대한 포상 등을 추천할 수 있다.
제23조(사후관리등) 구청장은 국외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하여 그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사후관리 등) 구청장은 국외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그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제24조(준용) 구의 행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구비의 부담으로 실시하는 구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자등 민간인의 국외여행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준용) 구의 행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구의 부담**으로 실시하는 구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사람 등 민간인의 국외여행은 이 규정을 따른다.

[별표 1]

공무국외여행 허가절차(제3조제2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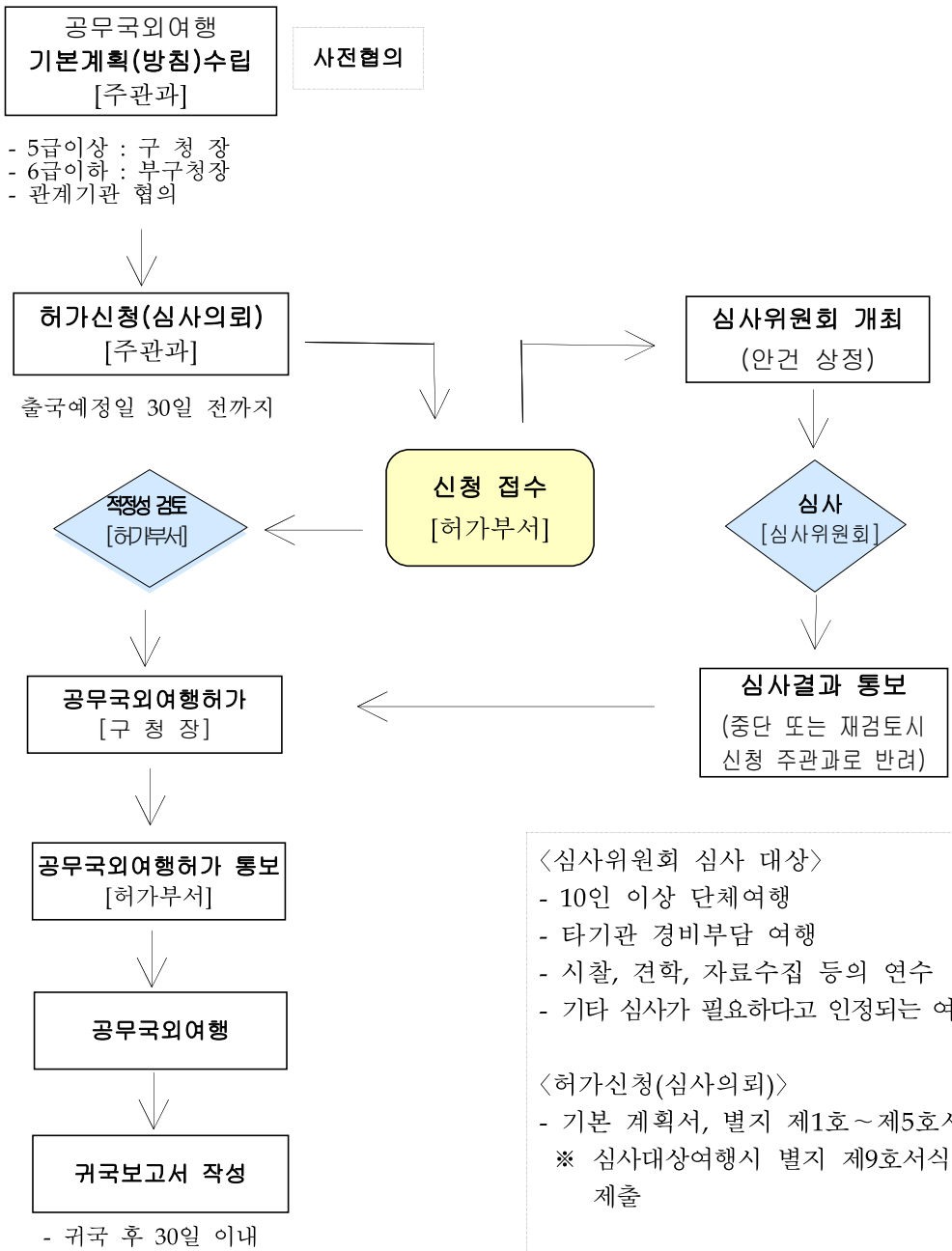

〈심사위원회 심사 대상〉
- 10인 이상 단체여행
- 타기관 경비부담 여행
- 시찰, 견학, 자료수집 등의 연수
- 기타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여행

〈허가신청(심사의뢰)〉
- 기본 계획서, 별지 제1호~제5호서식
  ※ 심사대상여행시 별지 제9호서식 추가 제출

〈귀국보고서 작성〉
- 별지 제10호 서식

[별표 2]

□ 심사기준(제7조제5항 관련)

구 분	내 용
여행의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여행을 억제하고 국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여행을 우선 허가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여행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
	▸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여행자의 적합성	▸ 여행자의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귀국 후 상당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자를 선발하여야 함
	▸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여행인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함
	▸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경우는 초청자의 경비부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억제
여행기간의 적정성	▸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여행시기의 적시성	▸ 여행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습·공휴일·연휴기간·재난·재해 위험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도록 함
	▸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도록 함
여행경비의 적정성	▸ 국외여비규정에 따라 산출 지급 여부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여부
	▸ 용역기관·산하기관 등과의 여행 여부 ※ 자비에 의한 국외여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음

□ 우선적용 기준

❍ 구 자체계획으로 구정에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출장계획 우선

❍ 매년 중복되는 연수는 격년제, 동일 또는 유사목적 연수는 자제

❍ 개인별 국외여행 경력을 감안하여 최근 3년 이내 여행자 가급적 제외

❍ 중앙계획 등에 따라 국외연수의 경우 업무의 전문성과 연관 있는 사람 우선

❍ 어느 한 실·국에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여행심사 요청서

○ ○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총무과장
제 목: 공무국외여행 심사 의뢰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국외여행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무국외여행심사를 요청합니다.

아 래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생년월일)	여행목적	여행국 (경유국)	여행기간	여행경비 ($)	비고

첨부: 1.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부
2. 이력서 1부
3. 공무국외여행서약서 1부
4. 항공운임증명서(G.T.R) 1부
5. 여행방침 및 그 밖의 증빙서류 1부

주관부서의 장(인)

[별지 제6호서식]

공무국외여행 심사의결서

안 건 명					
개최일시					
개최장소					
결정내용	○ 원안가결 : 건 ○ 수정가결 : 건 ○ 부 결 : 건				
붙 임	심사결과 1부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가	부	
위원장					
위 원					

고 시

인천광역시중구고시 제2013-48호

2013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3. 5. 31.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3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정·공시

· 대 상 (단위 : 필지)

구분	계	신포	연안	신흥	율목	도원	동인천	북성	송월	영종	운서	용유
중구	50,242	2,308	1,028	2,637	1,327	1,831	3,286	2,143	1,340	15,995	5,846	12,501

· 내 용 : 토지 지번별 가격(원/㎡)

· 결정·공시일 : 2013. 5. 31.

▣ 이의신청

· 기 간 : 2013. 5. 31～ 7. 1(30일간)까지

· 신청사항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신 청 처 : 중구청 지적과

·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방 법 : 중구청 지적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중구청 지적과에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문의처 : 중구청 지적과 토지관리팀【☎(032)760-7302～4】

공 고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3-487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에 따른 공시송달

우리 구 관내 건축물에 발생한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규정 위반(무단증축)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정 명령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 반송된 건이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3년 05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3. 05. 30. ~ 2013. 06. 14(15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인천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및 지정게시판
3.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4. 공시송달 대상

물건지	소유자			위반사항	반송사유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인천 중구 신생동 33-9 601호	김은주	660306-2******	인천 중구 우현로20번길62, 601호 (신생동,롯데아파트)	무단증축	폐문부재

5. 처분근거 : 『건축법』 제80조 및 제111조
6. 유의사항
   당해 통보에 따른 위반(무단증축)사항에 대하여 시정(철거 등)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른 처분(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받게 됨을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건축과(☎032-760-74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3-489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에 따른 공시송달

우리 구 관내 건축물에 발생한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규정 위반(무단가설증축)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정 명령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 반송된 건이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3년 05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3. 05. 30. ~ 2013. 06. 14.(15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인천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및 지정게시판
3.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
4. 공시송달 대상

물건지	소유자			위반사항	반송사유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인천 중구 신흥동1가 34-11외1필지	김영복	540621-2******	인천 부평구 부평동 699-210 연승하이츠 401호	무단가설증축	폐문부재

5. 처분근거 : 『건축법』 제80조 및 제111조
6. 유의사항
   당해 통보에 따른 위반(무단가설증축)사항에 대하여 시정(철거 등)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른 처분(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받게 됨을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건축과(☎032-760-74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3-493호

손실보상 열람 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명 : 영종미개발지역 소1-3호선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 5. 30.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168-33 ~ 중산동 1850-23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도로(소1-3호선)
   ○ 사업의 명칭 : 영종미개발지역 소1-3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구 분	사 업 규 모	시 점	종 점	비고
소로 1-3호선	- 연장(L)=1,281m - 폭원(B)=11.5m	운북동 168-33	중산동 1850-23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인천광역시중구청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27번길 80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3. 5월 ~ 2018. 5월
6. 보상대상 : 용지조서, 지장물 조서(www.icjg.go.kr) 참조
7.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13. 05. 31 ~ 2012. 06. 14(15일간)
   나.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건설안전과(☎ 032-760-7433)
8. 보상계획
   가. 보상대상 : 용지조서 및 용지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 열람합니다.
   나. 보상금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선정 후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 하여 보상금 산정
   ※ 동법 시행령 28조에 의거 토지소유자는 보상공고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 할 수 있습니다.
   다. 보상절차 : 손실보상 협의계약 체결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9. 기타사항
   ○ 기타 손실보상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건설안전과(☎ 032-760-743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체편입용지집계표

구 분	합 계	인천광역시 중 구 영 종 동			비고
		운 북 동	중 산 동		
	필지 / 면적(㎡)	필지 / 면적(㎡)	필지 / 면적(㎡)	필지 / 면적(㎡)	
계	60 / 22,008	28 / 6,057	32 / 15,951	/	
전	/	/	/	/	
답	3 / 1,151	3 / 1,151	/	/	
과 수 원	/	/	/	/	
목장용지	/	/	/	/	
임 야	/	/	/	/	
광 천 지	/	/	/	/	
염 전	/	/	/	/	
대 지	3 / 43	3 / 43	/	/	
공장용지	/	/	/	/	
학교용지	/	/	/	/	
주 차 장	/	/	/	/	
주유소용지	/	/	/	/	
창고용지	/	/	/	/	
도 로	3 / 383	2 / 207	1 / 176	/	
철도용지	/	/	/	/	
제 방	1 / 65	1 / 65	/	/	
하 천	/	/	/	/	
구 거	1 / 311	1 / 311	/	/	
유 지	/	/	/	/	
양 어 장	/	/	/	/	
수도용지	/	/	/	/	
공 원	/	/	/	/	
체육용지	/	/	/	/	
유 원 지	48 / 19,972	17 / 4,197	31 / 15,775	/	
종교용지	/	/	/	/	
사 적 지	/	/	/	/	
묘 지	/	/	/	/	
잡 종 지	1 / 83	1 / 83	/	/	
무 지 번	/	/	/	/	

국유지편입용지집계표

구 분	합 계	인천광역시 중 구 영 종 동			비고
		운 북 동	중 산 동		
	필지 / 면적(㎡)	필지 / 면적(㎡)	필지 / 면적(㎡)	필지 / 면적(㎡)	
계	5 / 7,865	2 / 493	3 / 7,372	/	
전	/	/	/	/	
답	/	/	/	/	
과 수 원	/	/	/	/	
목장용지	/	/	/	/	
임 야	/	/	/	/	
광 천 지	/	/	/	/	
염 전	/	/	/	/	
대 지	/	/	/	/	
공장용지	/	/	/	/	
학교용지	/	/	/	/	
주 차 장	/	/	/	/	
주유소용지	/	/	/	/	
창고용지	/	/	/	/	
도 로	2 / 358	1 / 182	1 / 176	/	
철도용지	/	/	/	/	
제 방	/	/	/	/	
하 천	/	/	/	/	
구 거	1 / 311	1 / 311	/	/	
유 지	/	/	/	/	
양 어 장	/	/	/	/	
수도용지	/	/	/	/	
공 원	/	/	/	/	
체육용지	/	/	/	/	
유 원 지	2 / 7,196	/	2 / 7,196	/	
종교용지	/	/	/	/	
사 적 지	/	/	/	/	
묘 지	/	/	/	/	
잡 종 지	/	/	/	/	
무 지 번	/	/	/	/	

사유지편입용지집계표

구 분	합 계	인천광역시 중 구 영 종 동			비고
		운 북 동	중 산 동		
	필지 / 면적(㎡)	필지 / 면적(㎡)	필지 / 면적(㎡)	필지 / 면적(㎡)	
계	55 / 14,143	26 / 5,564	29 / 8,579	/	
전	/	/	/	/	
답	3 / 1,151	3 / 1,151	/	/	
과 수 원	/	/	/	/	
목장용지	/	/	/	/	
임 야	/	/	/	/	
광 천 지	/	/	/	/	
염 전	/	/	/	/	
대 지	3 / 43	3 / 43	/	/	
공장용지	/	/	/	/	
학교용지	/	/	/	/	
주 차 장	/	/	/	/	
주유소용지	/	/	/	/	
창고용지	/	/	/	/	
도 로	1 / 25	1 / 25	/	/	
철도용지	/	/	/	/	
제 방	1 / 65	1 / 65	/	/	
하 천	/	/	/	/	
구 거	/	/	/	/	
유 지	/	/	/	/	
양 어 장	/	/	/	/	
수도용지	/	/	/	/	
공 원	/	/	/	/	
체육용지	/	/	/	/	
유 원 지	46 / 12,776	17 / 4,197	29 / 8,579	/	
종교용지	/	/	/	/	
사 적 지	/	/	/	/	
묘 지	/	/	/	/	
잡 종 지	1 / 83	1 / 83	/	/	
무 지 번	/	/	/	/	

편 입 용 지 집 계 표

구 분	계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비고
		국 유 지	공 유 지	사 유 지	
	필 지 / 면적(㎡)	필 지 / 면적(㎡)	필 지 / 면적(㎡)	필 지 / 면적(㎡)	
계	28 / 6,057	2 / 493	/	26 / 5,564	
전	/	/	/	/	
답	3 / 1,151	/	/	3 / 1,151	
과 수 원	/	/	/	/	
목장용지	/	/	/	/	
임 야	/	/	/	/	
광 천 지	/	/	/	/	
염 전	/	/	/	/	
대 지	3 / 43	/		3 / 43	
공장용지	/	/	/	/	
학교용지	/	/	/	/	
주 차 장	/	/	/	/	
주유소용지	/	/	/	/	
창고용지	/	/	/	/	
도 로	2 / 207	1 / 182	/	1 / 25	
철도용지	/	/	/	/	
제 방	1 / 65	/	/	1 / 65	
하 천	/	/	/	/	
구 거	1 / 311	1 / 311	/	/	
유 지	/	/	/	/	
양 어 장	/	/	/	/	
수도용지	/	/	/	/	
공 원	/	/	/	/	
체육용지	/	/	/	/	
유 원 지	17 / 4,197	/	/	17 / 4,197	
종교용지	/	/	/	/	
사 적 지	/	/	/	/	
묘 지	/	/	/	/	
잡 종 지	1 / 83	/	/	1 / 83	
무 지 번	/	/	/	/	

구 분	계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비고
		국 유 지	공 유 지	사 유 지	
	필 지 / 면적(㎡)	필 지 / 면적(㎡)	필 지 / 면적(㎡)	필 지 / 면적(㎡)	
계	32 / 15,951	3 / 7,372	/	29 / 8,579	
전	/	/	/	/	
답	/	/	/	/	
과 수 원	/	/	/	/	
목장용지	/	/	/	/	
임 야	/	/	/	/	
광 천 지	/	/	/	/	
염 전	/	/	/	/	
대 지	/	/		/	
공장용지	/	/	/	/	
학교용지	/	/	/	/	
주 차 장	/	/	/	/	
주유소용지	/	/	/	/	
창고용지	/	/	/	/	
도 로	1 / 176	1 / 176	/	/	
철도용지	/	/	/	/	
제 방	/	/	/	/	
하 천	/	/	/	/	
구 거	/	/	/	/	
유 지	/	/	/	/	
양 어 장	/	/	/	/	
수도용지	/	/	/	/	
공 원	/	/	/	/	
체육용지	/	/	/	/	
유 원 지	31 / 15,775	2 / 7,196	/	29 / 8,579	
종교용지	/	/	/	/	
사 적 지	/	/	/	/	
묘 지	/	/	/	/	
잡 종 지	/	/	/	/	
무 지 번	/	/	/	/	

용 지 조 서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일련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168-33	답	5,144	163		김기인	운북리 178				
2	168-85	답	306	306		변영호	중구 논골길 49, 2층동(운북동)	승의교회신용협동조합	인천 남구 숭의동 170-19	근저당권	
								남동신용협동조합	인천 남동구 만수동 856-1	근저당권	
								도원교회신용협동조합	인천 중구 도원동 12	근저당권	
3	168-66	제	72	65		최영표	중구 신도시남로 15, 106동 606호 (운서동, 금호베스티빌1단지아파트)				
4	168-69	잡	144	83		최영표	중구 신도시남로 15, 106동 606호 (운서동, 금호베스티빌1단지아파트)				
5	1257-148	원	368	368		김점순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117번길 22, 2326동 606호(상동, 라일락마을)				
6	1257-158	원	376	376		강박명	중구 논골3길 6(운북동)				
7	1257-145	원	381	381	182/381	김석규	중구 논골3길 9(운북동)				
					199/381	김기응	서구 청라라임로 109, 259동 1501호 (연희동, 호반베르디움)				
8	1257-49	원	1,536	318		우앙양홍킨	부평구 삼산동 454-46 삼산타운아파트 601-1003				
9	1257-164	원	325	325		강덕송	남동구 방죽로 501, 3동 1005호 (간석동, 우성아파트)				

일련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0	1257-162	원	164	164		홍건화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내기로 14-7, 205호(남사에버빌)				
11	1257-150	원	165	165		김종열	중구 논골3길 17(운북동)				
12	1257-149	대	78	4		김종열	중구 논골3길 17(운북동)				
13	1257-161	원	61	25		하재일	제천시 용두대로7길 36, 106동 601호 (하소동, 하소힐스테이트아파트)				
14	1257-160	원	335	335		하재일	제천시 용두대로7길 36, 106동 601호 (하소동, 하소힐스테이트아파트)				
15	1257-76	원	1,520	18		곽주연	계양구 효서로 105(효성동)				
16	1257-159	원	301	301		정정희	중구 운북동 1257-45(24/1)				
17	1257-172	원	247	8		곽주연	계양구 효서로 105(효성동)				
18	1257-173	원	19	19		곽주연	계양구 효서로 105(효성동)				
19	1257-109	원	205	205		배영숙	하남시 미사동 455(10/4)				
20	1257-75	답	3,306	682		오금성	중구 신도시북로 140번길 20(운서동)	중구농업협동조합	중구 운남동 433-3	근저당권 지상권	
21	1257-108	원	104	104		장승화	서초구 서초대로34길 34, 101동 301호 (방배동, 방배e-편한세상)				
22	1257-107	원	13	13		장소원	용산구 후암로 65, 101동 502호 (후암동, 브라운스톤남산)				
23	1257-169	도	178	25		장소원	용산구 후암로 65, 101동 502호 (후암동, 브라운스톤남산)				

일련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24	1257-2	대	323	6		천성모	시흥시 군서로 18번길 13-1(정왕동)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25	1257-97	원	1231	1,072	246.2/1231	천성모	시흥시 군서로 18번길 13-1(정왕동)				
					984.9/1231	이순경	중구 백운로 186번길 119(운북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중정로1가 75	근저당권 지상권	
26	1257-95	대	644	33		이순경	중구 백운로 186번길 119(운북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중정로1가 75	근저당권 지상권	
27	1258	도	10028	182		국(건설부)					
28	1259	구	26176	311		국(건설부)					
소 계			28필지	6,057							

용 지 조 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일련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1851	도	9,384	176		국(국토해양부)					
2	1850-114	원	8,992	412	1/6	은상기	서구 완정로64번길 7, 112동 2102호 (마전동, 영남탑스빌아파트)				
					1/6	서명애	화성시 병점2로 35, 103동 405호 (병점동, 주공아파트)				
					1/6	장정림	화성시 통탄지성로 405, 103동 106호(기산동, 화성태안푸르지오아파트)				
					1/6	이명자	서울 구로구 연동로 287, C동 42호 (항동, 그린빌라)				
					1/6	김지완	서울 구로구 연동로 287, C동 42호 (항동, 그린빌라)				
					1/6	임채엽	연수구 옥련로99번길 42, 102동 1505호 (옥련동, 아주아파트)				
3	1854	원	43,034	6,835		국(국토해양부)					
4	1850-288	원	2,033	50		이현주	연수구 컨벤시아대로42번길 96, 606동 403호(송도동, 더샵엑스포)				
5	1850-300	원	1,653	318		최정옥	중구 은골로20번길 6(운서동)				
6	1850-299	원	661	311		채진주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성산로123번길 22				
7	1850-68	원	992	5		김옥경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76, 103동 1103호 (행신동, 샘터마을)				

일련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8	1850-301	원	1,604	102		조영희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76, 6111동 401호(이의동, 광교e편한세상아파트)	신성새마을금고	부평구 십정동 319-2	근저당권	
						이경자	강남구 선릉로 126길 22, 104동 304호 (삼성동, 롯데캐슬프레미어)				
9	1850-398	원	644	486		이주현	서울 강남구 선릉로 206, 104동 501호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10	1850-302	원	678	177		이지연	서울 강남구 언주로30길 57, E동 1802호 (도곡동, 타워팰리스아파트)				
11	1850-294	원	992	130		김효숙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213, B동 3802호 (여의도동, 여의도금호리첸시아)				
12	1850-322	원	558	159		주식회사 부국산업개발	서울 강남구 삼성동 78-3 원일빌딩				
13	1853	원	86,612	361		국(국토해양부)					
14	1850-24	원	1,577	502	1/3	김갑성	당진시 감골길 13-3(시곡동)				
					1/3	최을산	연수구 컨벤시아대로42번길 61, 803동 1201호(송도동, 송도더샵그린애비뉴8단지)				
					1/3	김남주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218, 246동 707호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중구	관동1가 9번지	압류	
15	1850-155	원	1,577	456		김창수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28, 105동 1201호 (신대방동, 현대아파트)				
16	1850-158	원	608	98	1/8	이혜숙	남구 낙섬동로 104, 101동 1302호 (용현동, 용현성원상떼빌아파트)				
					1/8	성은주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96길 39, 101동 1301호(청담동, 삼성청담공원아파트)				
					1/8	이시응	서울 동작구 상도로13길 26, 301호 (상도동, 신성하이츠)				

일련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6	1850-158	원			1/24	김갑성	당진시 감골길 13-3(시곡동)				
					1/24	최을산	연수구 컨벤시아대로42번길 61, 803동 1201호(송도동, 송도더샵그린애비뉴8단지)				
					1/8	정영조	서울 송파구 중대로 101, 1202호 (가락동, 동부썬빌)				
					1/8	김창수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28, 105동 1201호 (신대방동, 현대아파트)				
					1/8	김길태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42길 53, 5에이호 (송파동)				
					1/24	김남주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218, 246동 707호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1/16	김문섭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44, 702호 (무궁화아파트)				
					1/16	김섭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1길 55, 109동 202호(굴화강변월드메르디앙)				
17	1850-161	원	1577	172		김길태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42길 53, 5에이호 (송파동)	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지상권	
18	1850-160	원	1,577.0	690	1/2	김문섭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44, 702호 (무궁화아파트)	김섭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1길 55, 109동	근저당권	
					1/2	김섭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1길 55, 109동 202호(굴화강변월드메르디앙)				
19	1850-159	원	525.0	84		서호원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96길 39, 101동 1301호(청담동, 삼성청담공원아파트)				
20	1850-396	원	526	4		서성원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96길 39, 101동 1301호(청담동, 삼성청담공원아파트)				
21	1850-165	원	1,612	768	2/3	김영구	서울 광진구 구의강변로 84, 102동 2201호 (구의동, 세양아파트)				
					1/3	성용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99, 9동 911호 (신천동, 진주아파트)				

일련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22	1850-389	원	500	5		김지호	군포시 번영로 580, 104동 111호 (금정동, 신환아파트)				
23	1850-388	원	500	93		김승렬	서울 관악구 난곡로 55, 225동 203호 (신림동, 관악산휴먼시아)				
24	1850-23	원	5,021	177		(주)부국산업개발	서울 강남구 삼성동 78-3 원일빌딩				
25	1850-33	원	1,653	80		정영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6, 101동 703호				
26	1850-346	원	339	53	1/2	강태희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 153, 305동 1502호(마두동, 강촌마을)				
					1/2	강욱	제주시 원노형로 102, 103동 601호 (노형동, 한화아파트)				
27	1850-27	원	1,813	39		오희종	중구 운중로 48번길 71(운남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권 지상권	
28	1850-345	원	1,154	548		오희종	중구 운중로 48번길 71(운남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권 지상권	
29	1850-28	원	3,306	1,588		배경희	중구 흰바위로 14, 210동 104호 (운서동, 금호베스트빌2단지아파트)	홍성혜	캘리포니아 캅스밸시 볼레로가 7343	근저당권	
30	1850-137	원	1,653	127		조대광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32번길 28(마평동)	서인천농업협동조합	서구 신현동 283-3	근저당권 지상권	
31	1850-139	원	2,201	726		오남숙	부평구 장제로374번길 11-15, 비동 402호 (삼산동, 보광빌라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권 지상권	
32	1850-231	원	4,410	219	1/2	강여원	서울 송파구 중대로 24, 305동 704호 (문정동, 훼밀리아파트)				
					1/2	변정환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55, 106동 1604호 (금곡동, 분당두산위브)				
소 계			33필지	15,951							

지 장 물 현 황 집 계 표

구 분			인천광역시				비고
			소 계	중 구			
				운북동	중산동		
합 계			8 / 245㎡	4 / 105㎡	4 / 140㎡		
건물	소 계		/	/	/		
	가옥	콘크리트조/슬라브	/	/	/		
		콘크리트조/슬레이트	/	/	/		
		적벽돌조/슬레이트	/	/	/		
		적벽돌조/슬라브	/	/	/		
		블럭/기와	/	/	/		
		블럭/슬레이트	/	/	/		
		컨테이너	/	/	/		
	공장	조립식/슬레이트	/	/	/		
		블록/슬레이트	/	/	/		
부속건물	소 계		5 / 162㎡	1 / 22㎡	4 / 140㎡		
	창 고	PIPE/천막	/	/	/		
		PIPE/슬레이트	/		/		
		PIPE/보온덮개	/	/	/		
		조립식/슬레이트	/	/	/		
		콘크리트조/슬라브	/	/	/		
		콘크리트조/슬레이트	/	/	/		
		콘테이너	2 / 68㎡	1 / 22㎡	1 / 46㎡		
	양식장	PIPE/루핑	1 / 34㎡	/	1 / 34㎡		
	개 사	PIPE/루핑	1 / 39㎡	/	1 / 39㎡		
	차 양	PIPE/판넬	1 / 21㎡	/	1 / 21㎡		
비닐하우스			3 / 83㎡	3 / 83㎡	/		
지장기타	한전주		11본	9본	2본		
	체신주		9본	9본			
	우수맨홀						
	오수맨홀						
	낚시터 좌대		6EA		6EA		
	양 식 장		6765㎡		6765㎡		
	관 정						

지 장 물 조 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 조 및 규 격	연면적	저 측 수 량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1	중구 운북동	1257-145	창 고	콘테이너	22㎡	22㎡	김석규	중구 논골3길 9 (운북동)	
2	중구 운북동	1257-49	계 사	비닐하우스	62㎡	3㎡	김종렬	서울 강남구 대치동 933-35 한티아파트402	
3	중구 운북동	1257-159	창 고	비닐하우스	10㎡	10㎡	정정희	중구 운북동 1257-45(24/1)	
4	중구 운북동	1257-97	창 고	비닐하우스	70㎡	70㎡	천성모	시흥시 군서로 18번길 13-1(정왕동)	
5	중구 중산동	1850-114	창 고	콘테이너	46㎡	46㎡	천무선	중산동 1854	
			양 식 장	파이프,루핑	79㎡	34㎡			
			개 사	파이프,루핑	97㎡	39㎡			
			차 양	파이프,루핑	27㎡	21㎡			
			양 식 장		43034㎡	6765㎡			
6	중구 중산동	1853	낚시터 좌대		6개소	6개소	만정낚시	중산동 1853	

한 전 주 조 서

번호	소 재 지	지 번	방 향	전 주 번 호	소 관 청	비 고
1	중구 운북동	NO. 25 + 6.0	좌	8023P252여남선20R9R5A1		
2	중구 운북동	NO. 27 + 0.0	좌	8023P253여남선20R9R5A2		
3	중구 운북동	NO. 28 + 10.0	좌	8023P351여남선20R9R5A3		
4	중구 운북동	NO. 30 + 0.0	좌	-		
5	중구 운북동	NO. 31 + 7.0	좌	8023P452여남선20R9R5A5		
6	중구 운북동	NO. 32 + 15.0	좌	8023P551여남선20R9R5A6		
7	중구 운북동	NO. 40 + 13.0	우	2023P852운북선58L27A3		
8	중구 운북동	NO. 42 + 0.0	우	8023P851운북선58L27A2		
9	중구 운북동	NO. 42 + 18.0	우	8023P954운북선58L27A1		
10	중구 중산동	NO. 44 + 15.0	우	8023P961운북선56L29L1		
11	중구 중산동	NO. 45 + 3.0	우	8023Q061운북선58L29		

체 신 주 조 서

번호	소 재 지	측 점	방 향	전 주 번 호	소 관 청	비 고
1	중구 운북동	NO. 25 + 6.0	좌			
2	중구 운북동	NO. 27 + 0.0	좌			
3	중구 운북동	NO. 28 + 10.0	좌			
4	중구 운북동	NO. 30 + 0.0	좌			
5	중구 운북동	NO. 31 + 7.0	좌			
6	중구 운북동	NO. 32 + 15.0	좌			
7	중구 운북동	NO. 34 + 4.0	좌			
8	중구 운북동	NO. 35 + 12.0	좌			
9	중구 운북동	NO. 43 + 0.0	우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3-494호

도로명주소 공시송달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변경하고 해당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우편을 이용하여 이를 고지하고자 하였으나, 주소(소재지)의 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수 없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하고자 공고합니다.

2013년 05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물등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변경하는 도로명주소

고지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종전 도로명주소	변경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및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는 인천광역시 중구청 지적과(전화:032-760-7825~9) 및 인천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일 : 2013.06.14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3.06.1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고지내용의 정정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지적과(☎032-760-782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도로명주소 공시송달 목록

※ 주소는 방문 또는 전화 열람 가능

성명	생년월일/등록번호	종전 도로명주소	변경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및 부여사유
김순례	19480205-2******	별	도	열 람
김지선	19860424-2******	별	도	열 람
고창운	19280724-1******	별	도	열 람
고형준	19700730-1******	별	도	열 람
김학자	19610515-5******	별	도	열 람
박원홍	19720216-6******	별	도	열 람
두수자	19590828-8******	별	도	열 람
이영민	19810130-*******	별	도	열 람
최연옥	19630302-2******	별	도	열 람
권승철	19750820-*******	별	도	열 람
김용숙	19510113-3******	별	도	열 람
장진택	19541219-2******	별	도	열 람
전한규	19730131-2******	별	도	열 람
이용빈	19761126-2******	별	도	열 람
김민자	19520105-2******	별	도	열 람
박구명	19680512-1******	별	도	열 람
김금숙	6503125-5******	별	도	열 람
이연희	19610504-2******	별	도	열 람
박소희	19480202-2******	별	도	열 람
엄명애	19490808-1******	별	도	열 람
이문준	**19841121-2********	별	도	열 람
최미숙	**19760830-2********	별	도	열 람
박지훈	**19510120-1********	별	도	열 람
강경아	**19440420-*******	별	도	열 람
이도연	19500305-5******	별	도	열 람
장보성	19570320-2******	별	도	열 람
백옥림	19560418-8******	별	도	열 람
이정애	19421003-2******	별	도	열 람
이광태	19380726-2******	별	도	열 람
이소정	19700418-8******	별	도	열 람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19371220-*******	**별**	**도**	**열 람**
최선화	19520901-1******	별	도	열 람
최재운	19571220-*******	별	도	열 람
강대원	19440716-6******	별	도	열 람
김동규	19691126-6******	별	도	열 람
염규만	19360319-2******	별	도	열 람
김응례	19461011-1******	별	도	열 람
이영훈	19710101-2******	별	도	열 람

성명	생년월일/등록번호	종전 도로명주소	변경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및 부여사유
김영자	19590905-5******	별	도	열 람
이정자	19621016-6******	별	도	열 람
변석광	19390726-1******	별	도	열 람
임유미	19320901-1******	별	도	열 람
한희정	19271006-2******	별	도	열 람
배창용	19320307-2******	별	도	열 람
조영훈	19320314-2******	별	도	열 람
정영미	19610826-1******	별	도	열 람
이화자	19540119-1******	별	도	열 람
김백용	19610320-1******	별	도	열 람
김재원	19491226-1******	별	도	열 람
박미순	19540127-1******	별	도	열 람
강순례	19530505-2******	별	도	열 람
손귀식	19360725-2******	별	도	열 람
윤정심	19491226-1******	별	도	열 람
노창근	19600918-1******	별	도	열 람
박순연	19580108-1******	별	도	열 람
오향화	19580616-2******	별	도	열 람
김제환	19730424-1******	별	도	열 람
오상욱	19761101-2******	별	도	열 람
윤신자	19550301-1******	별	도	열 람
이봉순	19590815-2******	별	도	열 람
이정수	19410610-1******	별	도	열 람
이향	19470108-2******	별	도	열 람
유진석	19611129-1******	별	도	열 람
지연복	19690711-2******	별	도	열 람
김명숙	19610817-2******	별	도	열 람
오두연	19601008-2******	별	도	열 람
이주남	19580815-1******	별	도	열 람
윤정도	19610103-1******	별	도	열 람
장수광	19721002-2******	별	도	열 람
전가실	19670717-1******	별	도	열 람
정인자	19420813-2******	별	도	열 람
윤정도	19540910-2******	별	도	열 람
이형선	19601226-1******	별	도	열 람
방준식	19711202-1******	별	도	열 람
전경숙	19430726-1******	별	도	열 람
김연환	19700826-1******	별	도	열 람
양인환	19491208-2******	별	도	열 람
박건용	19690802-1******	별	도	열 람
권진미	19520315-1******	별	도	열 람
임교빈	1132820-*******	별	도	열 람

성명	생년월일/등록번호	종전 도로명주소	변경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및 부여사유
장정미	19790425-1******	별	도	열 람
이명기	19761101-2******	별	도	열 람
신혜숙	19680427-2******	별	도	열 람
조미희	19540330-1******	별	도	열 람
임순호	19680808-2******	별	도	열 람
김인숙	19650518-1******	별	도	열 람
박종윤	19400502-1******	별	도	열 람
조춘희	19580206-2******	별	도	열 람
김정미	19560815-1******	별	도	열 람
이춘영	19550328-2******	별	도	열 람
이승섭	19570512-1******	별	도	열 람
방태석	19311112-2******	별	도	열 람
임진아	19810227-1******	별	도	열 람
황진영	19790812-2******	별	도	열 람
김춘자	19760914-2******	별	도	열 람
하순자	19560816-1******	별	도	열 람
이석민	19671126-1******	별	도	열 람
주영섭	19781210-2******	별	도	열 람
주재호	19680717-1******	별	도	열 람
김응용	19411018-1******	별	도	열 람
마화순	19420919-2******	별	도	열 람
최대규	19720726-1******	별	도	열 람
김한표	19711124-2******	별	도	열 람
필숙방	19530320-1******	별	도	열 람
김경환	19470624-2******	별	도	열 람
권진미	19530420-1******	별	도	열 람
김명숙	19751002-1******	별	도	열 람
권영태	19381216-1******	별	도	열 람
김경숙	19700526-1******	별	도	열 람
김덕비	19401117-1******	별	도	열 람
이은철	19310319-2******	별	도	열 람
조예진	19711019-1******	별	도	열 람
이용자	19730408-2******	별	도	열 람
김용남	19460329-1******	별	도	열 람
이규순	19330330-1******	별	도	열 람
이규옥	19620405-2******	별	도	열 람
김남훈	19521106-2******	별	도	열 람
홍하순	19291018-1******	별	도	열 람
안옥순	19350129-2******	별	도	열 람
우재현	19601028-1******	별	도	열 람
조원석	19620208-1******	별	도	열 람
조윤주	19540415-1******	별	도	열 람

성명	생년월일/등록번호	종전 도로명주소	변경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및 부여사유
민창오	19420910-1******	별	도	열 람
정명주	19630922-1******	별	도	열 람
조주희	19310524-2******	별	도	열 람
오매자	19681009-1******	별	도	열 람
정영근	19620802-1******	별	도	열 람
김년훈	19471008-1******	별	도	열 람
조언주	19510501-2******	별	도	열 람
김진헌	19641018-1******	별	도	열 람
송원석	19610409-1******	별	도	열 람
임낙숙	19320727-1******	별	도	열 람
이광복	19650403-2******	별	도	열 람
이원규	19440604-2******	별	도	열 람
이복식	19260622-2******	별	도	열 람
이응준	19530814-2******	별	도	열 람
김중석	19310825-2******	별	도	열 람
정봉녀	19621220-1******	별	도	열 람
김종필	19431220-2******	별	도	열 람
이한나	19781031-1******	별	도	열 람
이호용	19711013-2******	별	도	열 람
고봉호	19311209-2******	별	도	열 람
이도례	19691120-2******	별	도	열 람
이정혜	19691120-2******	별	도	열 람
최인자	19720901-2******	별	도	열 람
이경래	19490212-2******	별	도	열 람
이인순	19661206-1******	별	도	열 람
박복래	19420402-1******	별	도	열 람
이명옥	19410312-1******	별	도	열 람
윤근순	19630430-2******	별	도	열 람
박주열	19630510-1******	별	도	열 람
박승조	19470812-1******	별	도	열 람
안태철	19700918-1******	별	도	열 람
신장우	19380604-1******	별	도	열 람
김국용	19390808-2******	별	도	열 람
허두성	19460908-1******	별	도	열 람
김현자	19411206-1******	별	도	열 람
최금자	19570520-1******	별	도	열 람
신성윤	19370315-2******	별	도	열 람
최종수	19590524-1******	별	도	열 람
김표연	19580513-1******	별	도	열 람
김광림	19681009-1******	별	도	열 람
김광서	19620802-1******	별	도	열 람
백윤덕	19471008-1******	별	도	열 람

성명	생년월일/등록번호	종전 도로명주소	변경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및 부여사유
김정희	19580605-2******	별	도	열 람
김진자	19510501-2******	별	도	열 람
신대식	19460305-1******	별	도	열 람
장철호	19641018-1******	별	도	열 람
차수철	19610409-1******	별	도	열 람
유승현	19320727-1******	별	도	열 람
이건수	19591212-1******	별	도	열 람
윤중영	19431223-1******	별	도	열 람
고말례	19650403-2******	별	도	열 람
이경식	19460102-1******	별	도	열 람
이지명	19440604-2******	별	도	열 람
김정자	19260622-2******	별	도	열 람
윤안나	19530814-2******	별	도	열 람
차동환	19510611-1******	별	도	열 람
김용수	19540930-1******	별	도	열 람
김종명	19310825-2******	별	도	열 람
김완균	19621220-1******	별	도	열 람
안혜자	19431220-2******	별	도	열 람
최연욱	19781031-1******	별	도	열 람
최윤정	19711013-2******	별	도	열 람
홍윤기	19340415-1******	별	도	열 람
조용자	19311209-2******	별	도	열 람
오광옥	19691120-2******	별	도	열 람
오서영	19691120-2******	별	도	열 람
오유림	19720901-2******	별	도	열 람
이월선	19490212-2******	별	도	열 람
이천선	19661206-1******	별	도	열 람
최광용	19420402-1******	별	도	열 람
최명숙	19351127-2******	별	도	열 람
황인혁	19410312-1******	별	도	열 람
박희숙	19630430-2******	별	도	열 람
윤상용	19630510-1******	별	도	열 람
윤상준	19470812-1******	별	도	열 람
윤옥선	19450501-2******	별	도	열 람
윤인섭	19700918-1******	별	도	열 람
이주식	19380604-1******	별	도	열 람
황미선	19390808-2******	별	도	열 람
오정태	19460908-1******	별	도	열 람
이정길	19411206-1******	별	도	열 람
이창근	19570520-1******	별	도	열 람
이창순	19470810-2******	별	도	열 람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3-495호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명 : 영종미개발지역 소1-3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명 : 영종미개발지역 소1-3호선 도로개설공사】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청 도시개발과(☎760-7518), 건설안전과(☎760-74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6. 3.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046-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도로(소1-3호선)
   ○ 사업의 명칭 : 영종미개발지역 소1-3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구 분	사 업 규 모	시 점	종 점	비고
소로 1-3호선	- 연장(L)=319m - 폭원(B)=11.5m	중산동 1258-2	중산동 1033-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인천광역시중구청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27번길 80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3. 6월 ~ 2015. 6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붙임참조”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붙임참조”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참조”
9.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상세내용 및 도면 게재 생략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편입용지집계표

구분	계	국 유 지	사 유 지	비고
	필 지 / 면 적 (㎡)	필 지 / 면 적 (㎡)	필 지 / 면 적 (㎡)	
계	43 / 4,814	4 / 947	39 / 3,867	
전	11 / 2,519	/	11 / 2,519	
답	5 / 578	/	5 / 578	
임 야	1 / 180	/	1 / 180	
대 지	6 / 104	/	6 / 104	
도 로	19 / 1,245	3 / 759	16 / 486	
하 천	/	/	/	
구 거	1 / 188	1 / 188	/	
제 방	/	/	/	
유 지	/	/	/	
과 수 원	/	/	/	
묘 지	/	/	/	
목 장	/	/	/	
잡 종 지	/	/	/	
수 도	/	/	/	
공 장	/	/	/	
주유소용지	/	/	/	
기 타	/	/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토지조서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일련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1	1258-2	임	4,680	180	조진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177 타워팰리스아프트 에프-1003				
2	산408	도	427	82	국(국토해양부)					
3	1260-1	대	150	15	조영도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177 타워팰리스아프트 에프-1003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근저당권	
4	1260-2	도	26	26	유경선	중구 중산동 1115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90	가압류	
5	1260-4	도	1	1	박종관	남동구 만수동 876-2 동일다세대주택 1-202				
6	1260-3	전	870	56	조영도	서울 강남구 도곡동 467-177 타워팰리스아프트 에프-1003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근저당권 지상권	
7	1745	도	99	99	국(건설교통부)					
8	1265-2	도	20	20	장흥렬	중구 중산동 1251				
9	1746	구	1,319	188	국(농림수산식품부)					
10	1261-2	도	17	13	강경희	중구 마장포로 53번길 22(중산동)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11	1265-1	전	2,238	403	박영춘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1424	중구농협 협동조합	인천 중구 운남동 433-3	근저당권 지상권	
							㈜삼정상호저축은행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415-71	근저당권	
12	1748	도	5,289	578	국(국토해양부)					
13	1261	대	642	23	강경희	중구 마장포로 53번길 22(중산동)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14	1263-1	답	281	16	이광수	중구 중산동 1263-1	중구농협 협동조합	인천 중구 운남동 433-3	근저당권	
15	1264-1	도	30	30	유태영	중구 중산동 1115				
16	1263-2	도	7	7	김현홍	옹진군 영종면 중산리 1024				
17	1264-2	전	545	139	김지호	중구 중산동 878				
18	1046-2	도	245	121	강순애	부평구 부평동 799-3 건우아파트 다-311				
19	1046-1	전	1,488	980	강순애	부평구 부평동 799-3 건우아파트 다-311	서인천농협 협동조합	인천 서구 신현동 283-3	근저당권	
20	1043-1	전	192	159	장기홍	중구 중산동 1247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 중구 신포로 27번길 80	압류	
소 계				3,136.0						

일련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21	1043-2	도	30	30	장기홍	중구 중산동 1274	인천세무서		압류	
22	1042	답	420	7	김진산	남동구 만수동 938-23 현대다세대주택 나동101호				
23	1044-1	전	1,322	8	윤태식	운서동2745-2 풍림아이원3-1-1 단지아파트 103-206				
24	1039-1	도	36	36	조명석	중구 중산동 1060				
25	1039-3	답	572	438	유시완	중구 중산동 1351-4	중구농협협동조합	인천 중구 운남동 433-3	근저당권 지상권	
26	1039-4	도	10	10	조명석	중구 중산동 1060				
27	1039-9	전	327	10	김진산	남동구 만수동 938-23 현대다세대주택 나동101호				
28	1039-2	답	433	59	김진산	남동구 만수동 938-23 현대다세대주택 나동101호				
29	1039-6	대	656	10	김현홍	중구 중산로 8-1	삼성생명보험㈜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50	근저당권	
30	1039-5	도	40	40	조명석	중구 중산동 1060				
31	1039-12	전	424	28	김현홍	중구 중산로 8-1	삼성생명보험㈜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50	근저당권 지상권	
32	1039-13	답	58	58	김현홍	중구 중산로 8-1	삼성생명보험㈜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50	근저당권 지상권	
33	1039-7	대	656	11	김기붕	중구 중산로 1034-1				
34	1039-14	도	23	23	김기붕	중구 중산동 1034-1				
35	1039-15	대	557	10	김승민	남구 학익동 721 풍림아이원아파트 110-1003				
36	1034-4	도	12	12	이재신	서울 종로구 가회동 31-48				
37	1034-1	대	447	35	이재신	서울 종로구 가회동 31-48				
38	1034-2	도	50	50	김송인	중구 중산동 1067				
39	1013-3	도	50	50	백순길	중구 중산동 1079				
40	1033-1	도	30	17	김중구	중구 중산동 1314				
41	1033-6	전	1,001	140	좌경수	서울 서초구 반포동 50-8 신성리더스카운티 301호				
42	1033-5	전	352	82	좌경수	서울 서초구 반포동 50-8 신성리더스카운티 301호				
43	1033-2	전	1,001	514	좌경수	초구 반포동 50-8 신성리더스카운티 301호				
소 계				1,678.0						

전 체 편 입 용 지 집 계 표

인천광역시 중구

구분	총계			중산동			비 고
	필지	/	면적(㎡)	필지	/	면적(㎡)	
계	43	/	4,814	43	/	4,814	
전	11	/	2,519	11	/	2,519	
답	5	/	578	5	/	578	
임야	1	/	180	1	/	180	
대지	6	/	104	6	/	104	
도로	19	/	1,245	19	/	1,245	
하천		/			/		
구거	1	/	188	1	/	188	
제방		/			/		
유지		/			/		
과수원		/			/		
묘지		/			/		
목장		/			/		
잡종지		/			/		
수도		/			/		
공장		/			/		
주차장		/			/		
기타		/			/		

국 유 지 편 입 용 지 집 계 표

인천광역시 중구

구분	총계	중산동	비 고
	필지 / 면적(㎡)	필지 / 면적(㎡)	
계	4 / 947	4 / 947	
전	/	/	
답	/	/	
임야	/	/	
대지	/	/	
도로	3 / 759	3 / 759	
하천	/	/	
구거	1 / 188	1 / 188	
제방	/	/	
유지	/	/	
과수원	/	/	
묘지	/	/	
목장	/	/	
잡종지	/	/	
수도	/	/	
공장	/	/	
주차장	/	/	
기타	/	/	

사 유 지 편 입 용 지 집 계 표

인천광역시 중구

구분	총계		중산동		비 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39	3,867	39	3,867	
전	11	2,519	11	2,519	
답	5	578	5	578	
임야	1	180	1	180	
대지	6	104	6	104	
도로	16	486	16	486	
하천	/		/		
구거	/		/		
제방	/		/		
유지	/		/		
과수원	/		/		
묘지	/		/		
목장	/		/		
잡종지	/		/		
수도	/		/		
공장	/		/		
주차장	/		/		
기타	/		/		

편 입 용 지 집 계 표

구분	계	국 유 지	사 유 지	비고
	필 지 / 면 적 (㎡)	필 지 / 면 적 (㎡)	필 지 / 면 적 (㎡)	
계	43 / 4,814	4 / 947	39 / 3,867	
전	11 / 2,519	/	11 / 2,519	
답	5 / 578	/	5 / 578	
임 야	1 / 180	/	1 / 180	
대 지	6 / 104	/	6 / 104	
도 로	19 / 1,245	3 / 759	16 / 486	
하 천	/	/	/	
구 거	1 / 188	1 / 188	/	
제 방	/	/	/	
유 지	/	/	/	
과 수 원	/	/	/	
묘 지	/	/	/	
종 교 용 지	/	/	/	
잡 종 지	/	/	/	
수 도	/	/	/	
공 장	/	/	/	
주 차 장	/	/	/	
기 타	/	/	/	

총 지 장 물 집 계 표

구 분	단 위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비 고
건 물	동/M2	2 / 157.7		
담 장 철 거	M2	함 석	4.5	
		철 제	25	
한 전 주	본	8		
체 신 주	본	8		

기 존 건 물 현 황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구 분	구 분		동 수	면 적 (M2)	비 고
계			2.0	157.7	
주 건 물	소 계				
	관정				
	스레트				
	슬라브				
	조립식				
부 속 건 물	소 계		1	8.1	
	스레트				
	목조		1	8.1	
비닐하우스			1	149.6	
컨테이너					

건 물 조 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구조 및 규격	수량(M2)	소유자		비고
	구	동				성명	주 소	
1	〃	〃	1046-2	비닐하우스	149.6			
2	〃	〃	1046-2	목조	8.1			
계					157.7			

담 장 집 계 표

행 정 구 역	노선	단 위	구 조	수 량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소1-3호선	M2	함석	4.5
			철제	25.2
계	함석	4.5	철제	25.2

소 1-3호선 담 장 조 서

번호	측 점		방 향	연 장	면 적	비 고
1	STA. 0+068.5	STA. 0+080.8	우	12.6	25.2	함석휀스 H=2.0,T=0.2
	STA. 0+241.2	STA. 0+241.8	우	4.5	4.5	함석휀스 H=1.0,T=0.2
합 계				17.1	29.7	

한 전 주 집 계 표

행 정 구 역	노선	단 위	수 량	비 고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소1-3호선	본	8	
계			8	

소 1-3호선 한 전 주 조 서

번호	소 재 지	지 번	위치(STA.)	방향	전 주 번 호	소 관 청	비 고
1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260-2 도	0+019	좌	8022H 691 196 L8 영종간	한 국 전 력	
2	〃	1265-1 전	0+052	우	8022H 681 196 L7 영종간	〃	
3	〃	1046-1 전	0+090	좌	8022H 581 196 L6 영종간	〃	
4	〃	1043-1 전	0+180	좌	8022H 471 196 L4 영종간	〃	
5	〃	1039-2 답	0+242	좌	8022H 362 196 L2 R2 영종간	〃	
6	〃	1039-14 도	0+266	좌	8022H 352 196 L2 R1 영종간	〃	
7	〃	1748 도	0+268	우	8022H 351 196 L2 영종간	〃	
8	〃	1748 도	0+318	좌	8022H 253 196 L1 영종간	〃	

체 신 주 집 계 표

행 정 구 역	노선	단 위	수 량	비 고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소1-3호선	본	8	
계			8	

소 1-3호선 체 신 주 조 서

번호	소 재 지	지 번	위치(STA.)	방향	전 주 번 호	소 관 청	비 고
1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산408 도	0+010	좌		KT	
2	〃	1265-1 전	0+028	좌		〃	
3	〃	1265-2 도	0+052	우		〃	
4	〃	1748	0+067	좌		〃	지
5	〃	1046-1 전	0+090	좌		〃	
6	〃	1046-1 전	0+159	좌		〃	
7	〃	1033-6 전	0+233	우		〃	
8	〃	1748	0+282	좌		〃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3-496호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명 : 영종미개발지역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명 : 영종미개발지역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중구청 도시개발과(☎760-7518), 건설안전과(☎760-74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6. 3.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산37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도로(소3-1호선)
   ○ 사업의 명칭 : 영종미개발지역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구 분	사 업 규 모	시 점	종 점	비고
소로 3-1호선	- 연장(L)=357m - 폭원(B)=6.0m	중산동 1017-2	중산동 산16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인천광역시중구청장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27번길 80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3. 6월 ~ 2015. 6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붙임참조”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붙임참조”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참조”
9.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상세내용 및 도면 게재 생략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편입용지집계표

구분	계	국 유 지	사 유 지	비고
	필 지 / 면 적 (㎡)	필 지 / 면 적 (㎡)	필 지 / 면 적 (㎡)	
계	26 / 3,365	6 / 2,063	20 / 1,302	
전	5 / 820	1 / 131	4 / 689	
답	/	/	/	
임 야	2 / 976	1 / 827	1 / 149	
대 지	9 / 516	1 / 138	8 / 378	
도 로	9 / 1,038	3 / 967	6 / 71	
하 천	/	/	/	
구 거	/	/	/	
제 방	/	/	/	
유 지	/	/	/	
과 수 원	/	/	/	
묘 지	/	/	/	
창 고 용 지	1 / 15	/	1 / 15	
잡 종 지	/	/	/	
수 도	/	/	/	
공 장	/	/	/	
주유소용지	/	/	/	
기 타	/	/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토지조서

일련번호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1	1017-2	도	129	6	김기흠	중구 중산동 1014-4				
2	1018-2	도	258	10	이순분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원청리 67-3				
3	1018-1	대	324	138	인천광역시 중구					
4	1030	대	63	18	김남용	동구 창영동 116-38				
5	1748	도	5,289	87	국(국토해양부)					
6	1027-2	대	336	66	오정애	중구 중산동 1027-1				
7	1027-3	도	19	19	오정애	중구 중산동 1027-1				
8	1282-4	대	1,150	65	윤은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687 등촌2단지 주공아파트 203-1103	윤은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38 강선마을 208-1703	근저당권	
9	1028	전	397	288	박유복	인현동 24-11				
10	1282-6	대	1,484	141	윤국한	호주 오스트랄리아 엔에스더블유 2073 핌블 처치 스트리트 1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 중구 신포로 27번길 80	압류	
11	1282	전	1,137	274	김명식	중구 중산리 1024				
12	1282-3	대	2,001	25	홍경섭(2/3)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91 확곡푸르지오아파트 125-802				
					이경자(1/3)		㈜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13	1282-11	도	29	29	홍경섭(2/3)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91 확곡푸르지오아파트 125-802				
					이경자(1/3)					
14	1282-10	도	2	2	이정석	중구 운남동 1550 영종자이아파트 115-504	옹진농협 협동조합	인천 중구 유동 6-3	근저당권 지상권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 남동구 고잔동 636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9층	근저당권	
15	1282-5	대	575	3	이정석	중구 운남동 1550 영종자이아파트 115-504	옹진농협 협동조합	인천 중구 유동 6-3	근저당권 지상권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 남동구 고잔동 636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9층	근저당권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 중구 신포로 27번길 80	압류	
16	1282-9	도	89	5	김기생	중구 중산동 1282-2	중구농협 협동조합	인천 중구 운남동 433-3	근저당권	
17	1281	전	413	66	김현암	중구 중산동 1024				
18	1814	도	256	256	국(농림수산식품부)					
19	1281-1	대	648	5	김기흠	중구 중산동 1014-4	㈜우리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권	
20	1272-1	전	8,608	131	국(기획재정부)					
소 계				1,634.0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토지조서

일련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권 리	성 명	소유권이외의 권리	
21	1272-16	대	289	55	김필수	경기도 파주시 아동로 82-19 가동 505호(아동동,은하수아파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권	
22	1272-10	창	228	15	김옥선	중구 중산동 1272-4	영종새마을금고	인천 중구 운남동 125-9	근저당권	
23	1281-2	전	1,811	61	김의자	연수구 옥련동 270-2				
24	산373	도	3,259	624	국(국토해양부)					
25	산162-1	임	17,344	149	김현암(1/5)	중구 운서동 2701-7				
					김현호(1/5)	남동구 만수동 13 주공아파트 404-807				
					김현홍(1/5)	서구 심곡동 302 한국아파트 202-1211				
					김의자(1/5)	연수구 옥련동 639-2 현대아파트				
					김현덕(1/5)	남구 학익동 48-1 신동아아파트 28-603				
26	산161	임	22,810	827	국(산림청)					
소 계				1,731.0						

전 체 편 입 용 지 집 계 표

인천광역시 중구

구분	총계		중산동		비 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계	26	3,365	26	3,365	
전	5	820	5	820	
답					
임야	2	976	2	976	
대지	9	516	9	516	
도로	9	1,038	9	1,038	
하천					
구거					
제방					
유지					
과수원					
묘지					
창고용지	1	15	1	15	
잡종지					
수도					
공장					
주차장					
기타					

국 유 지 편 입 용 지 집 계 표

인천광역시 중구

구분	총계			중산동			비 고
	필지	/	면적(㎡)	필지	/	면적(㎡)	
계	6	/	2,063	6	/	2,063	
전	1	/	131	1	/	131	
답		/			/		
임 야	1	/	827	1	/	827	
대 지	1	/	138	1	/	138	
도 로	3	/	967	3	/	967	
하 천		/			/		
구 거		/			/		
제 방		/			/		
유 지		/			/		
과 수 원		/			/		
묘 지		/			/		
목 장		/			/		
잡 종 지		/			/		
수 도		/			/		
공 장		/			/		
주 차 장		/			/		
기 타		/			/		

사 유 지 편 입 용 지 집 계 표

인천광역시 중구

구분	총계	중산동	비 고
	필지 / 면적(㎡)	필지 / 면적(㎡)	
계	20 / 1,302	20 / 1,302	
전	4 / 689	4 / 689	
답	/	/	
임 야	1 / 149	1 / 149	
대 지	8 / 378	8 / 378	
도 로	6 / 71	6 / 71	
하 천	/	/	
구 거	/	/	
제 방	/	/	
유 지	/	/	
과 수 원	/	/	
묘 지	/	/	
창 고 용 지	1 / 15	1 / 15	
잡 종 지	/	/	
수 도	/	/	
공 장	/	/	
주 차 장	/	/	
기 타	/	/	

편 입 용 지 집 계 표

구분	계	국 유 지	사 유 지	비고
	필지 / 면적(㎡)	필지 / 면적(㎡)	필지 / 면적(㎡)	
계	26 / 3,365	6 / 2,063	20 / 1,302	
전	5 / 820	1 / 131	4 / 689	
답	/	/	/	
임야	2 / 976	1 / 827	1 / 149	
대지	9 / 516	1 / 138	8 / 378	
도로	9 / 1,038	3 / 967	6 / 71	
하천	/	/	/	
구거	/	/	/	
제방	/	/	/	
유지	/	/	/	
과수원	/	/	/	
묘지	/	/	/	
창고용지	1 / 15	/	1 / 15	
잡종지	/	/	/	
수도	/	/	/	
공장	/	/	/	
주차장	/	/	/	
기타	/	/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총 지 장 물 집 계 표

구 분	단 위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비 고
건 물	동/M2	1 / 24.1		
담 장 철 거	M2	함 석	14.2	
		철 제	56	
한 전 주	본	10		
체 신 주	본	9		

기 존 건 물 현 황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구 분	구 분		동 수	면 적 (M2)	비 고
계			1.0	24.1	
주 건 물	소 계				
	관정				
	스레트				
	슬라브				
	조립식				
부 속 건 물	소 계				
	스레트				
비닐하우스			1	24.1	
컨테이너					

건 물 조 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구조 및 규격	수량(M2)	소유자		비고
	구	동				성명	주소	
1	〃	〃	1027-2	비닐하우스	24.1			
계					24.1			

담 장 집 계 표

행정구역	노선	단위	구조	수량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소3-1호선	M2	함석	14.2
			철제	56
계	함석	14.2	철제	56

소 3-1호선 담 장 조 서

번호	측 점	방 향	연 장	면 적	비 고
1	STA. 0+017.3 STA. 0+017.5	우	8.8	8.8	함석휀스 H=1.0,T=0.2
	STA. 0+113.1 STA. 0+140.0	우	28.0	56.0	철제휀스 H=2.0,T=0.2
	STA. 0+202.9 STA. 0+207.8	우	5.4	5.4	함석휀스 H=1.0,T=0.2
합 계			42.2	70.2	

한 전 주 집 계 표

행 정 구 역	노선	단 위	수 량	비 고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소3-1호선	본	10	
계			10	

소 3-1호선 한 전 주 조 서

번호	소 재 지	지 번	위치(STA.)	방향	전 주 번 호	소 관 청	비 고
1	〃	1028 전	0+073	좌	8022H 172 97 L1 운북간	〃	
2	〃	1282-6 대	0+088	우	8022H 181 97 운북간	〃	
3	〃	1282-3 대	0+142	우	8022H 195 98 운북간	〃	
4	〃	1272-1 전	0+175	우	8022H 192 99 운북간	〃	
5	〃	1272-16 대	0+218	우	8022F 102 100 R1 운북간	〃	
6	〃	1281-2 전	0+227	좌	8022F 101 100 운북간	〃	
7	〃	산373 도	0+265	우	8022F 111 101 운북간	〃	
8	〃	산373 도	0+279	우	8022F 112 101 L1 운북간	〃	
9	〃	산161 임	0+309	좌	8022F 122 101 L2 L1 운북간	〃	
10	〃	산161 임	0+344	우	8022F 123 101 L2 L1 운북간	〃	

체 신 주 집 계 표

행 정 구 역	노선	단 위	수 량	비 고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소3-1호선	본	9	
계			9	

소 3-1호선 체 신 주 조 서

번호	소 재 지	지 번	위치(STA.)	방향	전 주 번 호	소 관 청	비 고
1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282-6 대	0+093	우		KT	
2	〃	1282 전	0+125	좌		〃	
3	〃	1281 전	0+157	좌		〃	
4	〃	1281-1 대	0+180	좌		〃	
5	〃	산373 도	0+212	좌		〃	
6	〃	산373 도	0+241	좌		〃	
7	〃	산161 임	0+269	우		〃	
8	〃	산161 임	0+306	좌		〃	
9	〃	산161 임	0+338	우		〃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3-500호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

1.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담배소매업 폐업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상호	소재지	판매구분	폐업일자
애플트리디앤아이	인천 중구 신흥동3가 33-35	제7조의3제1항	2013.05.30

2. 이에 따른 인근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8항, 제9항,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법한 영업소에 한하여**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지정할 예정이오니 희망자께서는 아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13. 5. 31 ~ 2013. 6. 7**

나. 접수 및 문의처: 중구청 경제지원과(☎ 032-760-7363)

다. 접수서류

(1)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우선 지정 자격증명서류 각 1부

- 장애인(**장애인증명서** : **동주민센터** 발급)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원** : **보훈청** 발급)

※ 본인 및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포함

라. 참고사항

(1)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

(3) 우선지정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013년 5월 31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